

차 LawSCHOOL O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8. MAR + APR



03/04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It's not that I'm so smart , it's just that I stay with problems longer.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1879-1955)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8
03 + 04



발 행 일 2018년 3월
등 록 번 호 2289-0262
발 행 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 · 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 행 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 자 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 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
- 08 파워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 12 언론 속 로스쿨
- 16 법조 윤리를 말하다
송경훈 변호사
- 20 행복 로스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정훈
- 23 BOOK
- 24 SPECIAL REPORT
- 36 로스쿨 오피니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부교수
- 38 로스쿨 핫이슈
- 40 특별기고
법률사무소 다음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륜 대표변호사 전희정 변호사
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해군법무관 배연관
- 50 로스쿨 특파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하영
- 56 로스쿨 생활백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그것이 알고 싶다!
- 60 건강멘토링
- 62 책 읽어주는 변호사
- 66 문화가 산책
- 68 협의회 소식
- 70 OUT CAMPUS / LAW QUIZ

‘핵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미래형 수월성을 보유한 법조인 양성’으로 요약되는 <G²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히 크고 많은 것 그 너머의 가치를 추구한다’(Go beyond Greatness)는 비전으로 혁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학자로서 <G²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명순구 원장을 만났다. editor. 박소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

“법은 정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법률가로서의 소명감을 가져야”



Q. 타 법전원과 차별화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고려대학교는 1905년 이 땅에서 처음으로 법학을 고등교육으로 시행한 교육기관입니다.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점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高大法學은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에 필요한 인재를, 해방 후에는 산업화·민주화를 위한 핵심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이끌었

약 력

■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파리 1대학(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 경 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미) 기사장 수훈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전국교무처장협의회 회장 역임
- 고려대학교 공로상, 석탑강의상, 석탑연구상 수상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법제처 자문위원 등 역임
-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던 리더들의 가르침, 가령 敎育救國(교육으로써 나라를 구한다), 公先私後(나보다는 세상과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등의 정신은 실천적 지침으로 작용했습니다. “高大法學” 113년은 한국 법학의 한 축을 이루었고, 이는 미래 한국 법학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高大法學”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문명의 변혁기에 세계법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 발전은 역사를 주도한 주체가 그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 고등교육의 역사를 시작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통속적 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법학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법학 미래 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법학미래기획단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A. 미래기획단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혁신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미래기획단은 주로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현안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기획단의 구성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의 타 단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인사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입체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미래기획단은 매우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기획단은 <G² 프로그램>을 프레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² 프로그램>은 “단순히 크고 많은 것 그 너머의 가치를 추구한다”(Go beyond Greatness)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가야 할 것”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점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려대학교

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을 수반한 발전계획이 없다면 로스쿨과 법률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로스쿨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급급할 것이고, 이는 각 로스쿨들을 변호사시험 합격률, 선호분야 진출 숫자 등 통속적 지표의 경쟁으로 내몰게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법학교육의 중심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핵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미래형 수월성을 보유한 법조인 양성”의 두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미래기획단이 있습니다.

Q.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법전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A. 우리의 교육목적은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과 법학자의 양성”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최신 학문 경향과 사회적 요구, 학생 개인의 성취도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으로 설계했습니다.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은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전문화(Specialization)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국제비즈니스와 국제통상법무를 축으로 하는 GLP(Global Legal Practice), 영어강의 강화, 해외석학 초빙 특강, 외국 우수 로스쿨과 실질적인 교류, 외국 우수 로펌 및 국제기구 인턴십 등의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화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16개 전문과정(공익·인권, 분쟁해결, 고용·복지, 금융, 조세, 해상 등)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이지만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거둬 2017년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高大法學이 48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더불어 비정규교육과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수 선배학생이 후배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튜터링이 그 예입

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그 활동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입체적 법률교육의 사례입니다.

Q. 특성화 과목을 ‘국제법무(GLP)’로 정한 까닭과 국제법무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일군 나라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미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무대학원 등에서 국제비즈니스 및 국제통상 관련 교과과정을 광범위하게 개설·운영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제비즈니스와 국제통상을 “GLP”(Global Legal Practice)의 이름으로 특성화 영역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외국학자들의 방문이 빈번하고, 해외인턴십, 해외 모의재판대회, 국제상사중재대회, 국제법무 현장시찰, 학생교류 등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LP 프로그램은 법률시장의 개방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Q. 일각에서는 법전원을 ‘돈스쿨’, ‘금수저 집단’으로 매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개교 법전원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법전원만의 장학혜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최근 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여 정부는 학생들의 장학금에 수혜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이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는 그와 무관하게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장학제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등록금 수입액의 약 35%를 교내의 장학금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인원은 연평균 약



1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만의 특성을 말하자면 재원이 매우 다채롭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교수들이 조성한 교수장학회도 있을 정도이니가요. 특히 교수(고려대학교는 동문을 ‘교우’로 표현함)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장학회는 고려대학교만의 자랑거리입니다. 장학금의 명목도 등록금 면제에서 더 나아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생활장학금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합격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관한 논란의 원인은 이해합니다만, 사안이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초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근본취지(“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에서 보면 합격률 자체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변호사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입니다. 교육으로써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교육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서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요. 합격률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시험도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고요,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고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법률시장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지요. 변호사시험 합격률으로써 법률시장의 판단을 대신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Q. 변호사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우리 사회가 그 수를 온전히 수용하지

감성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지도자적 법률가가 될 수 없습니다.
감성능력은 일시적인 노력으로
함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본 방향이 감성 함양으로
지향되어 있어야 합니다.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로스쿨 체제를 선택할 때 추구했던 목적에 유의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체제로는 변화하는 국내외 법률시장의 현실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지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과거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과거 변호사의 직무가 주로 법조였다면 로스쿨 시대 변호사의 주된 직무는 비즈니스입니다. “변호사 공급 과잉”이라는 말은 과거의 기준(변호사는 법조인이다)에서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법조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로스쿨 교육과정도 이러한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Q. 원장으로서의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요?

A. 굳이 하나만을 얘기하라면 로스쿨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로스쿨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

사이에 간격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에 대한 규제를 생각해 보지요. 규제당국이 법무부, 교육부 등으로 다원적이며, 규제의 기준 또한 획일적입니다. 로스쿨의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로스쿨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규제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그 규제의 기조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로스쿨 제정의 원천적 적자구조, 로스쿨별 특성화 계획의 실종, “변호사시험의 사법시험화” 등과 같은 현상은 앞으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Q. 10기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새내기 법학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다른 분야도 그러하지만 법률가에게 특별히 중요한 능력은 타인과의 소통능력입니다. 소통을 위한 필수 요건은 법학전공에 대한 탄탄한 실력입니다. 실력을 구비하지 못하면 동료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학전공에 관한 식견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성적 소통능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도 감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감성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지도자적 법률가가 될 수 없습니다. 감성능력은 일시적인 노력으로 함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본 방향이 감성 함양으로 지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 법은 정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법률가로서의 소명감 등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사법시험 존폐 논란으로 전국이 들썩였던 2015년. 각종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은 사법연수원 출신이지만 로스쿨 학생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겠다고 밝히며 이슈가 된 인물이 있다. 이찬희 변호사의 이야기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회장에 당선되었고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를 찾아 이찬희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ditor. 박소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소통 능력”

**Q.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으로서는 취임한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A. 평생 가장 바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의 약75%인 17,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의 지방변호사회입니다. 취임이후 출장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안 쉬고 주말까지도 출근해서 일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걸로 보이는 홍보성 치적 위주의 사업보다는 변호사회 내부의 병폐를 바로 잡고자 하였고, 회원 복지향상과 업무편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울회와 대한변협의 재무이사를 역임한 재무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과거에 비해 상당한 예산 절감을 이뤘습니다. 사무국 체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하였고, 회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기 위하여 전자결제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나는 대로 회원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던데 실제로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계신지요?**

A. 외부적으로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변협입니다. 과거에 서울회가 전체 변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기반하여 대화와 조정보다는 대한변협과 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변협과 서울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갈등하면서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회장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업무에 대한 입법과 정책, 유사직역 대책 등 정책이나 이념적인 부분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협의체인 대한변협이 맡아서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방변호사회인 서울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생 노력에 현재 회원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Q. 취임이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집행부에 아직 법조경력이 적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 몇 년 간 회무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선거에서 지나치게 대결구도를 형성해서 승리한 후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회의 주역이 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시행착오 없이 회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한 번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집행부 임원이 되지 못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부회장, 상임이사 등으로 중용하였고, 이사회도 정원의 40%가량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임명하였습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회무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변호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회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회무 운영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회원들이 되고, 집행부 구성원들은 회원들의 칭찬에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Q. 사법시험 존폐 논란 과정에서 ‘로스쿨생의 아버지’라는 친근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서 로스쿨을 대변하는 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어릴 적부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생 노력에
현재 회원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못하는 성격입니다.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간통죄 폐지, 사법시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인정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재벌이나 권력자의 간통이었다면 절대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간통죄 폐지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어린 여군 하사가 간통으로 전과자가 되고 군대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선변호를 맡아 적극적으로 변론했는데 결국 위헌결정까지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면서 로스쿨을 옹호하게 된 계기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젊은 변호사가 “변호사님 혹시 로키라고 들어보셨나요?”라고 자괴감 섞인 한마디를 하는 것을 보고 변호사회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싶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이 없더니 금수저라느니 하면서 근거없는 비하와 매

도를 당하는 변호사회 내에서 약자였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경력과 변호사회 회무 경험이 풍부한 제가 신문에 기고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이 힘을 얻었다고 지금도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Q. 올해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데 현재의 로스쿨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여러 번 말했지만 저도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던 때에는 다른 변호사들처럼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좀 더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도입하고자 생각했습니다.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제도가 교육제도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제도의 변경은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였습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어느 것도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면 로스쿨제도를 흔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도입 초반부터 당시 변호사회부터 나서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면서 로스쿨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시가 폐지되었고 로스쿨로 일원화되었으니 모든 역량을 로스쿨의 정상화와 발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Q. 로스쿨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지금까지 법조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따로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변호사회, 법전협,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



공자의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능가하지 못하고(知之者不如好之者),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능가하지 못한다(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말처럼,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물론이고 교육부, 법무부, 대법원 등 유관기관이 전부 참여해서 로스쿨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으로는 결국 로스쿨 재학생들과 로스쿨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개혁에는 로스쿨을 가장 잘 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재학생, 교수님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사실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가 로스쿨의 힘만으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쿨의 도입은 사학법과 빅딜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시폐지 역시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로스쿨의 힘만으로는 결코 둘 다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는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다듬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아쉬운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로스쿨 교과과정, 6개월 간 의무적 실무수습 등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산적한 해결 과제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조차도 ‘너무 민감한 문제라든지,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켜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별 변호사나 로스쿨을 막 수료한 변호사들이 찾아와서 후배들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변호사가 과거처럼 부와 명예라는 두 마리 토

끼를 모두 잡는 직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자면서도 소송하는 꿈을 꾸다고 할 정도로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는 어려운 직업입니다.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소통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직업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이기도 하지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전문성 함양에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는 직업입니다. 의뢰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면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상대방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능가하지 못하고(知之者不如好之者),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능가하지 못한다(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말처럼,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

약력

■ 학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S.J.D)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경 력

제94대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총괄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언론 속 로스쿨

변호사는 실업자 되면 안되나... 취업·소득 보증수표 아냐

[매경이 만난 사람]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세상이 무한 경쟁 시대로 바뀌었는데 변호사는 왜 실업자가 되면 안 됩니까.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가 취업을 보장해주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올해부터 전격 폐지되면서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법조인 양성 기관이 됐다. 그만큼 사회적 중요성과 위상도 격상됐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에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해버렸다.

도입 10년을 앞둔 로스쿨 제도가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선 것이다.

9일 매일경제는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을 만났다.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날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됐다.

이 이사장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며 로스쿨 제도를 비

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림없는 소리”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되레 “요즘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다고 ‘용’이 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이사장은 “개업해도 사무실 월세조차 못 내는 변호사가 어딜 봐서 ‘용’이냐”며 실소를 터뜨렸다.

과거 300명을 뽑던 사법시험은 국가가 법률 전문 공무원을 뽑는 일종의 공무원시험이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실상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서 국가가 취업과 월급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변호사시험은 공무원시험이 아니다. 그저 자격증을 따는 시험에 불과하다. 자격증을 딴 것은 출발선에 서는 것일 뿐, 본격적인 달리기 경주에서 앞서나가고 뒤처지고, 또는 포기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선택에 달린 것이라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변호사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인정받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현실”이라며 “시험에 붙는 것으로 취업과 소득이 보장되고 상위계층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합격자는 매년 ‘1000명’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매년 응시자의 60%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 이사장은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1000명이라는 숫자는 ‘송무’ 영역에만 한정해 산출한 숫자”라며 “이제 변호사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곳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 법무팀 같은 곳에 법학과 출신이 갔는데, 그런 자리를 변호사가 채워야 한다”며 “세상이 달라진 만큼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치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격률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시험이 됐다는 얘기”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인데 현재로선 시험으로 법조인을 뽑는 기존 사법시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한 것 자체를 일종의 정원제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로스쿨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이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더해 전문 변호사가 되도록 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로선 사회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오히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머리 회

로스쿨에 입학한 것 자체를

일종의 정원제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격시험화해야 한다.

전이 빠르고 ‘시험’에 능숙한 학부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서 월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금수저 돈스쿨’에 대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가난한 사람은 로스쿨을 다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등록금이 국립대는 한 학기 평균 550만원, 사립대는 850만원 정도다. 여기에 장학금이 30%가량 지급되는 것을 감안해 장학금을 빼고 계산하면 국립대는 평균 400만원, 사립대는 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이는 사립대 학부 등록금과 유사하거나 경영대학원 같은 특수대학원 등록금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돈 없어도 본다고 얘기하지만 시험 응시에만 돈이 들지 않는 것이지,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옛날에는 절에서 공부해 붙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 사법시험생은 대부분 학원에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고시원비를 내면서 공부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전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공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이



사장은 “개별 로스쿨의 합격률 공개는 곧바로 로스쿨의 서열화로 이어진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이 서열화하면 결과적으로 각 로스쿨은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등위를 올리려고 노력할 텐데, 그 방법은 결국 학생의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또한 로스쿨이 입시학원처럼 운영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로스쿨이 불리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방 로스쿨은 지방 인재 육성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20%가량 뽑게 돼 있다”며 “이들은 우대받아 뽑힌 사람인 만큼 일반 전형으로 뽑힌 사람과 동일한 시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면 합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로스쿨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변호사 수입료를 여전히 건당 300만원, 500만원으로 부르는 곳이 많다. 과거에는 더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변호사가 많아지

면 동네 의원을 찾아가듯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작년 500억 적자…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장학제도로 바뀌야

‘100명 정원’ 설계한 학교 ‘40명만 인가’ 적자 불가피

美·日처럼 많이 뽑아야 우수한 교수 더 많이 채용

“현재의 장학 제도는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부나 의학전문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장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의 현재 장학 제도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런 말을 하면 로스쿨생에게 욕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며 ‘무이자 대여 장학금’ 제도를 제안했다.

그가 말하는 ‘무이자 대여 장학금’ 제도는 로스쿨 졸업생이 취업 후 일정 기간 후에 원금만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말한

교육부가 특성화 로스쿨을 만들라고 해서 특정 분야 전문 교수들을 많이 뽑고 기자재를 구매했는데 이를 상황에 맞게 줄이지도 못하게 하니 비용만 늘어난다. 로스쿨의 이 같은 재정난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장학금 혜택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빌려주기만’ 하자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전문가가 되겠다며 선택하는 곳”이라며 “특별자격증을 따러 오는 사람들에게 왜 국가나 사학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이 이처럼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로스쿨이 겪고 있는 재정난 때문이다.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교육부가 로스쿨로 하여금 등록금을 15% 인하(사립) 또는 동결(국공립)하도록 한 후 국내 전체 로스쿨은 작년 약 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재정 악화로 당초 등록금 총액의 43%가량을 장학금으로 제공하던 로스쿨은 교육부가 마련한 최저 기준선인 30% 수준으로 장학금을 줄여야만 했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로스쿨 적자의 원인으로 교육부의 ‘정원 규제’를 꼽았다. 그는 “처음에 로스쿨이 인가 신청을 할

때 40명을 바라보고 한 곳은 없다. 적어도 100명, 큰 곳은 150명을 바라보고 설계하고 지원했는데 교육부는 40명밖에 인가해주지 않은 곳도 있다”며 “로스쿨은 100~150명을 기준으로 건물을 짓고 교수를 채용해왔는데, 교육부는 훨씬 적은 정원을 인가해주고선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특성화 로스쿨을 만들라고 해서 특정 분야 전문 교수들을 많이 뽑고 기자재를 구매했는데 이를 상황에 맞게 줄이지도 못하게 하니 비용만 늘어난다”며 “로스쿨의 이 같은 재정난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장학금 혜택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로스쿨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재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 로스쿨은 인가주의 방식을 채택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준칙주의를 채택했다”며 “우리는 교육부에서 인가해준 정원 이상을 뽑지 못하게 하는 반면, 미국·일본은 교원을 많이 뽑는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학생을 많이 뽑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창**

■ He is...

△1955년 충남 보령 출생 △한양대 법과대학 학사, 한양대 법학 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 박사 △1990년 한양대 법대 교수 △2009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2013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2014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2015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7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기사출처_매일경제 2018-01-09

법조윤리를 말하다 ②

법조윤리시험의 동향과 문제분석

지난 호에 이어 제8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는 판례를 근거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제8회 법조윤리시험(1책형) 문 31.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ㄷ.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으로 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나,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을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위 ㄷ.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의 주 응시자가 로스쿨 1, 2학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오를 가리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제근거는 아래 판례(96다25500)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3학년들이라면 사실관계를 떠나 “위임인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결론 정도는 들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손해배상(기)】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자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중략)



송경훈 변호사

-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 2014~2016
법무부 법조인력과
공익법무관
- 2016~2017
법무법인(유) 한결
소속변호사
- 2017~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임@모는 피고들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 동안 소송사건 외에도 피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임@모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임@모와 사용자관계에 있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과실이 20%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여러 상속인들 중 일부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그 의뢰인들로부터 상속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 상당을 편취했던 사안입니다(현물분할한 사안).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위임인(의뢰인)이 수임인(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언제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나듯이 법원은 ‘장기간 동안 소송사건 외에도 피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다’는 점을 근거로 지휘·감독관계 및 위임인(의뢰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 판결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호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출제자들에게는 판례만큼 확실한 재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문항은, 각자 공부하는 교재에 담긴 판례만큼은 제대로 익힐 필요가 있음을 수험생들에게 시사한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판례만큼 오답 시비가 없는 재료는 바로 법령·법규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신설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으나, 타법개정을 이유로 하는 개정이 대다수이고 실제 의미 있는 개정은 찾지 않습니다. 반면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변호사회 회칙이나 회규는 1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되고 법조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자주 바뀝니다. 게다가 회칙이나 회규는 법령처럼 개정내용이 신구조문대비표 등으로 공고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변경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법령·법규의 변경사항을 따라가며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부하는 교재에 법령·법규의 변경사항이 잘 담겨 있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개정사항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만큼 오답 시비가
없는 자료는 바로
법령·법규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신설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으나, 타법개정을
이유로 하는 개정이
대다수이고 실제 의미
있는 개정은 찾지
않습니다.

최근 「변호사법」의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으로 격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8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제8회 법조윤리시험(1책형) 문 1.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문 1.의 답항은 ①이었습니다. 위 ④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2017. 3. 14. 법률 제14584호로 「변호사법」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법」[시행 2016.7.1]
[법률 제14056호, 2016.3.2, 타법개정]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1. - 3. 생략
4.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6.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변호사법」[시행 2017.9.15]
[법률 제14584호, 2017.3.14, 일부개정]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 3. 생략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117조(과태료)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 8. 생략

제117조(과태료)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 2. 생략
3. 삭제 <2017.3.14.>
4. - 8. 생략

이렇듯 법령이나 법규의 의미 있는 개정사항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조윤리시험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법전원생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6개월여간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사항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때때로 챙겨 두면 수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



책소개



[법조윤리]는 법조윤리시험을 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주요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법조윤리 관련규정은 직접 찾아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본문 내에 법규의 내용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마지막 검토 과정에서 각주의 분량이 상당부분 증가하였고, 법조윤리시험의 범위를 뛰어넘는 내용도 다수 보강되었다.
저 자 : 송경훈 변호사
출판사 : 로스타트

3년 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달리는 로스쿨 학생들의 스트레스 강도는 어떨까? 0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수치화하자면, 대부분의 학생이 10의 언저리에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 있으니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최선을 다 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로스쿨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박정훈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editor. 박소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정훈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어”

아직은 막연하지만 저는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영화 <공공의 적2>에서 설경구 배우가 ‘꼴통 검사’를 연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윗선에서는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 수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Q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어려서부터 법조인을 꿈꿔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짧게 준비했었는데, 당시에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었고,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스쿨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이나 커리큘럼 등이 제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망설임 없이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Q 지난 1년 동안 한양대 로스쿨에서 부학생회장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학생회 활동을 한 이유가 있나요?

A 처음부터 학생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후보자 등록을 한 선본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막연하기만 했던 생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 아닌 ‘부학생회장’을 맡은 이유는, 저보다 학생회장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온 학생회장이었는데요. 서로가 생각하는 바를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기로 결심했고, 그 생각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Q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요?

A 크게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서 각각의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업에 너무 열중하다보니 학생회의 공지사항을 잘 읽지 않아서 생기는 해프닝도 간혹

사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을 금수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 보면 금수저 학생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있었습니다(웃음).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 사람들을 포함한 동기·선·후배들과 끈끈하게 연대할 수 있었고, 부학생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로스쿨=금수저’라는 항간의 오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사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을 금수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 보면 금수저 학생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법시험 시절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학업량과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오해들로 인해 더 상처받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Q 졸업 후에는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아직은 막연하지만 저는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영화 <공공의 적2>에서 설경구 배우가 ‘꼴통 검사’를 연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윗선에서는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 수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Q 갓 로스쿨에 입학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로스쿨에 갓 입학한 분들을 보면 중간고사 이후에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법학 관련 시험을 로스쿨에 들어와서 처음 치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스킬도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조금함을 느끼기 보다는, 본인이 최선을 다 했다면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디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웃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 내게 질문을 해온 학우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배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창**

박정훈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노하우! 로스쿨 입시에 왕도는 없다!

▶ 시간 조절을 위해 치명적인 실수를 줄일 것!

-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비해 리트를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집중했었다. 기출과 함께 풀었던 PSAT 문제도 도움이 됐다. 만약 리트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취약한 과목의 수업을 들어서 문제풀이 접근 방법을 알아내고 익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리트에서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간 조절'이다. 일단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에서 지문에 나왔을 것 같은 키워드를 짚어 놓은 다음 문단을 빠르게 읽으면서 문제와 관련 없는 문단은 넘어갔다. 문제와 관련 있는 문단이라면 자세히 읽고 문제를 풀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명적인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가령,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옳은 것을 고르면 정말 치명적이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푼 다음 제대로 답을 고른 것인지 재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자기소개서는 여러 사람에게 침묵 받아야

- 자기소개서는 로스쿨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므로 그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되 단점은 잘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 요령껏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색한 부분이나 헛점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면접의 핵심은 일관된 주장과 힘 있는 논리

- 면접은 스테디를 하면서 준비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에서 하나의 주제를 고른 뒤 모의면접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힘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되 무리한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BOOK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법으로 읽는 유럽사



서양사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정치권력)이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써왔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 다툼은 법의 언어로 말해져 권력의 토대를 닦고 사회를 유지하거나 혹은 변화시켜나갔다. 이 책은 역사를 '법'의 시선으로 읽는다. 또한 역사 속에서 법 사유의 거대한 흐름과 굴절을 읽는다.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는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원리로 되새길 수 있다. 책은 서양의 법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법이 조선시대와는 단절을 겪으면서 그 기원을 유럽법에 두고 있고, 유럽법은 바로 로마법과 교회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역사와 정신 속에서 유래하게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밝혀나갈 수 있다.

저 자 : 한동일
가 격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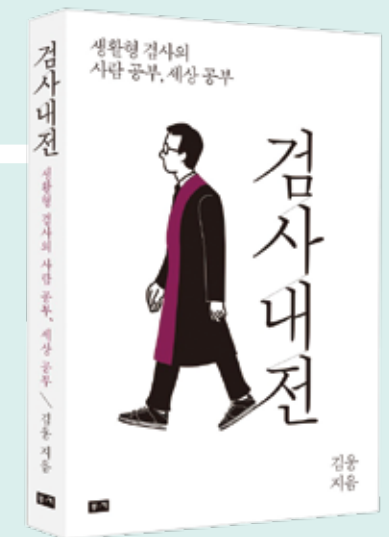
출판사 : 글항아리
발행일 : 2018.01.12.

드라마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검사의 이야기! 검사내전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둘러싼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려서부터 검사를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엉겁결에, 어쩌다 보니 검사가 된 저자가 다른 데 욕심내기보다 검사라는 직분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기록을 담고 있다. 검사실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파열음이 직선적이고 단편적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들여다볼수록 다양하고 모순적이기에, 세상의 일들을 직선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야기의 뒷면과 진짜 사연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법, 그리고 두렵고 원시적인 존엄함에 대한 생각들을 마주하게 된다.

저 자 : 김웅
가 격 : 15,000원

출판사 : 부키
발행일 : 2018.01.19.



지난 1월, 홍콩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세미나가 진행됐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홍콩대학교 로스쿨과 로펌, 법원 등을 방문하여 법조인 양성제도, 로스쿨 교육과정과 평가, 변호사시험, 국내 변호사의 동남아지역 진출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editor, 박소희

홍콩 사법제도 참관기

명재진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연수 행사로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홍콩대학(University of Hongkong), 고등법원(High Court),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유명 로펌인 클리포드 채스(Clifford Chance)를 방문하여 그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참관을 하였다. 3박 4일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홍콩의 사법제도를 직접 참관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홍콩의 사법제도에 대한 경험은 향후 로스쿨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1월 23일 화요일 일정

(1) 홍콩 대학과 로스쿨, 홍콩법원

홍콩대학을 오전 10시에 방문해서 13시 30분까지 법과대학의 교육시스템 특히, 변호사 양성제도와 시설 투어 및 오찬 환담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홍콩대 학장의 인사와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의 인사가 있었고, 홍콩대 측에서 섹션별로 담당교수가 한 시간씩 설명하고 질의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홍콩대 교육시설 투어를 하고 홍콩대 교수들·원장들이 점심을 같이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았다.

홍콩대학의 인상은 전통의 대학과 현대적 대학의 융합적 모습이었다.

신축된 최신식 도서관은 매우 현대적이어서 참관하는 동안 놀라움 그 자체였다. 특히 학생들이 배려한 소파를 배열한 도서 열람실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형식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자료들을 편집할 수 있는 영상편집실과 적합하게 많은 수가 설치된 애플 컴퓨터 등은 홍콩대학의 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홍콩대학의 Michael Horr 로스쿨 학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수학한 분이고 홍콩 법과대학의 국제적 모습을 잘 소개해 주었다. Zhao Yun 학과장과 Richard Cullen교수의 홍콩로스쿨의 변호사 양성 과정과 최근의 개혁움직임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홍콩 기본법 제8조에 의해 2047년까지 50년간은 반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국 보통법계(common law)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홍콩에서 변호사가 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왼쪽부터 아래로)
대학교 입구에서
홍콩대학교 Richard Cullen교수의 설명Cullen교수의 설명
홍콩대학교의 최신식 도서관에서
홍콩대학교의 영상편집실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학부에서 4년 과정의 LL.B. (법학사)학위를 받거나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과정인 2년 과정의 J.D. 학위를 취득한 후에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과정을 거쳐야 된다. PCLL 과정은 학위과정이 아니고 증명서(certificate)를 받는 하나의 실무연수프로그램이다. 법정변호사 혹은 사무변호사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조실무를 수행할 자격이 부여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PCLL과정은 1년 과정의 직업적 법조자격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이다. 실무적 과목인 금융법, 국제중재, 가족법, 소

송법, 법문서 작성, 재판실무 등의 강좌들이 있다. 따라서 PCLL에서 증명서(Certificate)를 받고 나서 이후에 각자는 스스로 법정변호사(大律師:barrister)와 사무변호사(律師:solicitor)로 나누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법정변호사는 1년 동안 법정 변호사 사무실(Chamber라고 부른다)에서 실무를 배우게 되고, 사무변호사는 2년 동안 사무변호사 사무실(Office라고 부른



다)에서 업무를 배우게 된다. 2016년 기준으로 법정변호사가 1275명, 사무변호사가 8279명 활동 중이다. 또한 법정변호사들의 단체는 'HK Bar Association'이라고 하고 사무변호사단체는 'Law Society of HK'이라고 구분되어 있다.

현재 홍콩에서 J.D. 과정을 제공하는 로스쿨은 세 개의 대학인데, 이는 홍콩대(University of HK), 홍콩시티대학(香港城市大學: City University of HK),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 Chinese University of HK)이다. 참고로 홍콩대학은 LL. B. 과정의 학생을 연간 200명 정도 그리고 J.D. 과정의 학생을 50명 정도 뽑고 PCLL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된다. 홍콩시립대와 홍콩중문대학은 각각 150명 정도의 변호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 실무 수습을 거쳐 실제적으로 법률시장에 나가게 되는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또한 홍콩은 3개 법과대학에서 약 650명이 졸업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한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것이 부럽다. 인구에 비해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더니, 홍콩대 법과대학장의 답은 국가, 기업 등에서는 수요가 더 많아 정원을 더 늘려서 배출을 더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와는 판판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최소한 교육을 통

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80% 정도가 합격해야 답인 것 같다.

(2) 고등법원(High Court) 소개와 재판 참관

홍콩 고등법원은 하급심의 항소법원 역할과 일정사건의 1심법원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당일 홍콩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을 먼저 참관하고, 매기 पू (Maggie Poon: Judge of the Cort of Fisir Instance)판사가 홍콩 고등법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법정을 40분 동안 방청하고 나서, 판사의 재판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시간 반 동안 질의응답을 하였다.

홍콩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Court of Final Appeal), 고등법원(High Court), 구역법원(District Court),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안에도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있다. 지방법원은 형량 2년 이하의 사건의 1심을 담당하고 구역법원은 7년 이하의 사건의 1심을, 고등법원은 일정한 사건의 1심과 하급심의 항소사건을 담당한다고 한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 이전에는 홍콩 법원의 최종심이 영국 런던에 있는 추밀원(Privy Council)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반환 이후에는 홍콩 기본법 제81조에 의하여 홍콩 최고법원(Court of Final Appeal)이 설립되어 최종심을 홍콩에서 하게 되었다.

홍콩 고등법원에서 참관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홍콩 고등법원에서 1심이 있었던 것이었는



홍콩 고등법원에서

데,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다. 담당 주무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언어가 정해진다고 한다. 한쪽 당사자가 영어를 원하고 다른 당사자가 중국어를 원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언어를 결정한다. 홍콩 법원에서는 법정언어로 영어 또는 중국어로 변론이 진행된다. 당일의 법정에서는 살인죄의 피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해 변호인과 검사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을 위해 한 명의 법정변호인(barrister)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두 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들이 앉아 있었다. 고등법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중범죄가 많아 여기에는 배심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당일 참관한 사건에서도 7인의 배심원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중범죄의 경우에 사건 변론이 몇 주일씩 계속된다고 한다. 변론주의에 충실한 홍콩법원의 모습을 보며, 홍콩에 선진적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뻐했고, 홍콩의 자치권이 소멸되는 미래에도 지속되기를 기원해 보았다.

2. 1월 24일 수요일 일정

(1) 법무부(검찰청) 방문

24일 아침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법무부를 방문하였다. 홍콩 법무부 측에서는 한국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전원의 원장들이 온다고 하니 자료와 PPT를 준비하여 장시간 설명과 질의응답을 해주었다. 전체 원장님들이 배우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미남인 검찰국 차장검사가 설명을 하였다.

검찰국 사무차장(Deputy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인 Hui Siu-ting, Martin을 만나 검찰국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 검찰국은 법령검토분과(Sub division I), 정책 및 기획분과



25개교 원장단 단체사진



(Sub division II), 국가소송담당(Sub division III), 상업범죄담당(Sub division IV), 행정지원(Sub division V)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지만 담당하는 있어 역할분담이 나뉘어져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특정하여 수사요청을 하고 있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 우리의 제도와는 많이 달랐다. 이러한 홍콩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영국전통의 사법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로스쿨 원장님들 중 몇 분이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에 경찰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으나 담당자는 다행히 홍콩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여 우리를 머쓱하게 했다.

또한 검찰에서 사전에 기록들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변론하게 되어 있어, 법원에서 법관은 미리 사건기록을 읽지 않고, 사건을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처음 접한다고 한다. 보통법 전통의 역사로 인해 사법제도 운영이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변론 중심의 법원운영이 지나치게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홍콩 법무부에서

(2) Clifford Chance 로펌

오후에는 홍콩에 지사를 둔 세계적인 로펌인 영국계 클리포드 찬스를 방문하였다. 안내에 따라 27층 회의장에 들어섰는데 전망이 좋았고 뷔페식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Geraint Hughes 아시아 담당대표, 이석준 파트너변호사, 한국계 여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환담을 나눴다. 클리포드 찬스는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 36개 지사를 두고 있다. 이 로펌은 1802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 Clifford Turner와 Coward Chance가 1987년 합병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1992년 미국에 진출하고 1999년 독일계 로펌인 Pünder, Volhard, Weber & Axster와 그리고 미국계 로펌인 Rogers & Wells와 합병하였다. 이 로펌의 홍콩지사에는 금융 분야에 한국 국적인 이석준 파트너 변호사와 한국계 변호사들이 근무중이어서 홍콩에서의 국제로펌활동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홍콩은 이 로펌의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고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에 지사가 있다.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의 접점지역이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교두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 금융법 분야가 발달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로펌들 간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홍콩은 시민들이 영어에 능숙하고 실제로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통용되므로 미래법률시장 등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그 어느 곳보다도 높다. 우리나라의 로펌(김&장, 태평양)들도 이러한 이유로 홍콩 법률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미래가 밝다고 평가된다.

이석준 파트너 변호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직



Clifford Chance 로펌에서

접 외국계 로펌들이 송무에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법률시장이 개방되었다고 해도 제약이 많아 직접 송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 법률시장 개방속도가 많이 늦어져 한국 로펌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석준 변호사의 지적은 한국 법제가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나의 선입관을 무너뜨렸다. 이점은 국회차원에서 개선책이 나와야 하겠다.

3. 마치며

3박 4일의 홍콩 사법제도 참관은 짧았지만 홍콩의 주요 법조기관들을 방문하여 영미법계의 사법제도 운영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우리제도와는 많이 다른 보통법제의 사법제도는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 우선 업무의 배분에 의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협업과 상호견제는 우리법조계에 도입해도 환영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또한 법정에서 보여준 검사와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의 모습은 성숙한 법치주의를 보여주었고, 이 점도

우리가 더욱 본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홍콩에서는 법과대학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직역으로 100% 취업하는 것과 변호사 숫자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다. 무엇보다도 첨단인 홍콩대학의 도서관은 우리가 시급히 투자하여 모방해야 할 중요한 교육환경이며, 로스쿨 발전을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국제화가 부족한 우리 법조계의 모습을 홍콩에서 새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이를 위해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도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홍콩의 모습이 부러웠고, 이 분야에 활동하는 로펌들의 경쟁을 보면서 우리 로스쿨들도 이 영역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창**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원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오는 4월 27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응시생의 실력수준, 응시인원의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18.0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1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므로 변호사시험은 법률가의 기본소양과 자질,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시험이어서는 안 됨
 - 현재 합격자 결정 : 정원제 방식 ⇒ 자격시험으로 운영 전환 ⇒ 로스쿨 안착 기여
- 로스쿨제도는 고시낭인의 양산하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또 다시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됨
- 「변호사시험법」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의하면, 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2 연도별 변호사시험 응시, 합격 현황

구분	응시자 (전년대비 증가)	합격자(응시자 기준) (전년대비 증가)	불합격자 (전년대비 증가)	합격기준점수 (1,660 만점)
제1회	1,665명	1,451명(87.15%)	214명(12.85%)	720.46점
제2회	2,046명 (+381명)	1,538명(75.17%) (+87명)	508명(24.83%) (+294명)	762.03점
제3회	2,292명 (+246명)	1,550명(67.63%) (+12명)	742명(32.37%) (+234명)	793.70점
제4회	2,561명 (+269명)	1,565명(61.11%) (+15명)	996명(38.89%) (+254명)	838.50점
제5회	2,864명 (+303명)	1,581명(55.20%) (+16명)	1,283명(44.80%) (+287명)	862.37점
제6회	3,110명 (+246명)	1,600명(51.45%) (+19명)	1,510명(48.55%) (+227명)	889.91점
제7회	3,240명 (+130명)	안) 1,944명(60.0%) (+344명)	1,296명(40.0%) (-214명)	-



3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 변시 합격률은 전년도 합격률, 응시생의 실력수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과 아울러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이고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응시자대비 합격률 하락	o 전년대비(17년 기준) 3.75% 하락 - 제1회 87.15% ⇒ 제6회 51.45% : <u>35.7% 하락</u>
불합격자 대폭 증가	o 전년대비(17년 기준) 227명 증가 - 제1회 214명 ⇒ 제6회 1,510명 : <u>1,296명(7.1배) 증가</u>
응시생 실력수준 향상	o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 매년 증가 - 제1회 21명 ⇒ 제6회 <u>1,148명(54.6배) 증가</u> o 합격기준 점수 대폭 상승 - 제1회 720.46점 ⇒ 제6회 889.91점, <u>169.45점 상승</u>
법조인 배출상황 추이	o 신규 법조인 배출수 감소(사법연수원 출신 포함) - 2012년 2,481명 ⇒ 2017년 1,834명, <u>647명(26%) 감소</u>
특별전형, 지역균형인재	o 선발 확대(특전: 5%→7%, 지역선: 권고→의무 전환) - 일반전형 입학생보다 특별·지역균형인재로 입학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낮아 사회문제 야기 우려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합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하락되고 있음 (시험이 정원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
- 법전원 교육과정 연계 미흡, 중요판례보다 생소하고 지엽적인 판례 출제 지양
- 변호사시험 출제 시 난이도(지나친 긴 지문)를 높임으로써 응시자 대비 합격률 저하 의도 의혹 제기 (출제 범위 비공개)

4 응시자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

- 응시자대비 합격률 1회 87.15% ⇒ 6회 51.45%, 35.7% 급감
- “법전원 입학정원”은 법전원법에서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로 2,000명으로 결정한 것임.

변시낭인 양산	법전원 교육과정 파행	종래 사법시험 폐단 재현	법전원 설립취지 변질
변시 과목에만 학업집중, 학교수업 참여저하	수험위주 교육, 특성화·선택과목 붕괴, 학사관리 강화방안 유지 불투명	시험만 열중, 사교육 열풍, 변시낭인 발생	설립취지 퇴색, 일본 로스쿨 실패 답습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양성에 어려움 초래

5 입학부터 졸업까지 법전원 교육의 질 제고

■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사관리 철저

법전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정량평가 강화, LEET 개선) / 상대평가 실시: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 상향조정, 졸업시험 기준 강화 등

- 2016학년도 입학생(8기) 2,017명 중 유급 70명, 미수로 88명으로 총 158명 탈락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을 통한 재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
 - 2011년 연 1회 시행에서 2013년부터 연 3회 확대 실시
 - ※ 출제·시행경비 : 정부 예산지원 없이 25개 법전원에서 경비를 분담
 -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합숙 (약 100여명), 시행 후 평가·강평지도 활용
 - 법전원 졸업시험과 연계, 학사관리 강화에 기여

- 졸업시험 탈락생은 매년 증가(초기('11~'12년)에는 30~40명 수준, 1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90여명 수준)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공법, 형사법, 민사법) 보급, 강의자료 활용

- 법전원 실무역량 강화 등
 - (법원, 검찰, 경찰 교수파견 및 강의지원) 학기 중 법전원 학생 대상 실무과목 강의 지원
 - (리걸클리닉)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사건의 발굴·수행, 학교별 특성화연계
 - (실무수습) 법원, 검찰, 국회, 국세청, 법무법인, 기업 등 실습
 - (경연대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국방부, 특허법원 등 경진대회 참여

- 실무교수 1:1 개별지도, 튜터링제도 등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운영

- 로스쿨 교육여건 개선 등
 - 교육부 법전원 설치 이행점검 및 대한변협 평가를 통한 교육 질 개선
 - 학비부담 경감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
 - 전용도서관, 기숙사 시설, 열람실(1인 1석) 확보
 - 교원확보율 학생 1인당 6.4명 수준 유지

6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전원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된 자는 변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로 신규 법조인 배출은 2012년 2,481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변시 합격자 수의 상향조정이 요청됨
 - 2012년 2,481명(사1,030명 + 변1,451명) ⇨ 2017년 1,834명(사234명 + 변1,600명)

- 매년 변시응시자 대비 탈락자의 급증으로 인한 변시 낭인 양산의 해소 필요
 - 탈락자 1회 214명 ⇨ 6회 1,510명 : 1,296명 증가 (7.1배 증가)

- 특별전형(5%→7%), 지역균형인재(권고→의무전환) 선발제도로 입구는 확대되었지만 이들의 합격률이 낮아, 출구가 답보 상태임



-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원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적정수준 이상 합격 보장으로 타 자격시험과 형평성 유지 필요함
 - ※ 의사 93.8%, 치과의사 97.9%, 한의사 94.2%
 - ※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70%이상의 합격률을 보임

【최근법조인 배출상황 추이】 (단위:년,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	826	786	509	356	234	150	100	50	-
변호사 시험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600 (51.45)	1,944 (60.00)	1,944	
	탈락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296		
법조인 배출 계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2,094	2,044	1,994	

- ※ 1. 사시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배출이 병존하는 과도기는 지남, 사시 출신 법조인 배출 급감
- 2. 2018년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예측 : 58%일 때 1,879명(+279명), 55%일 때 1,782명(+182명), 53%일 때 1,717명(+117명)

붙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배출한 신규 법조인 수는 평균 2,200여명임

① 변호사시험 면과락자 현황

- 제6회 시험의 면과락자이나 불합격자는 1,148명으로 제1회 21명보다 54.6배 증가함 (단위:명)

구분	응시 인원	합격 점수	과락		면과락자	합격인원	면과락이나 불합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1회	1,665	720.46	193	11.6%	1,472	1,451	21	0.1%
제2회	2,046	762.03	343	16.8%	1,703	1,538	165	8.1%
제3회	2,292	793.70	342	14.9%	1,950	1,550	400	17.5%
제4회	2,561	838.50	355	13.8%	2,206	1,565	641	25.0%
제5회	2,864	862.37	412	14.4%	2,452	1,581	871	30.4%
제6회	3,110	889.91	369	11.8%	2,741	1,593	1,148	36.9%
제7회	3,240							

② 변호사시험 통계 관련 오류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과 법전원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 입학 후 3년 만에 바로 응시한 경우 초시로 분류하고, 이후 재시, 3시, 4시로 구분함
 - 그러나 이 구분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5년 내 5회임에도 불구하고 휴학 등을 하는 경우 '6시, 7시'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
- 〈예시〉 2014학년도 입학생(6기)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년도	일반적 개념			법무부 개념		
	휴학 안함	1년 휴학	2년 휴학	휴학 안함	1년 휴학	2년 휴학
졸업년도	2017. 2	2018. 2	2019. 2	2017. 2	2018. 2	2019. 2
2017년	초시(1)	-	-	초시(1)	-	-
2018년	재시(2)	초시(1)	-	재시(2)	재시(1)	-
2019년	삼시(3)	재시(2)	초시(1)	삼시(3)	삼시(2)	삼시(1)
2020년	사시(4)	삼시(3)	재시(2)	사시(4)	사시(3)	사시(2)
2021년	오시(5)	사시(4)	삼시(3)	오시(5)	오시(4)	오시(3)
2022년		오시(5)	사시(4)		육시?(5)	육시?(4)
2023년			오시(5)			칠시?(5)

- ※ 1회~3회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했으나 4회 시험부터 법무부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이 소수만 증가하는 결과 초래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방식으로 합격률을 통제하는 것보다 자격시험으로써 작동되어야 한다.

이형규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올해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 지난 1월 9일,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5개 권역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3,240명이 응시 했는데, 이는 전년도 응시생(3,110명)보다 130명이 증가한 것이다. 수험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매년 누적된 결과이다.

2012년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7.17%(응시자 대비)에 달했다. 그러나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작년에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전체응시자의 51.44%만이 합격하였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학위취득 후 5년 5회’로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던 오시생들은 탈락하면 다른 진로를 찾아야만 한다.

정부는 사법시험 제도로 인한 학부교육의 황폐화, 고시낭인의 폐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만큼 통제하여 수많은 탈락자를 양산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과정의 운영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로스쿨은 정부의 설치인가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 교육 과정, 교원 확보를 하였으며, 미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법조인 양성제도로써 전혀 부족함이 없다.

둘째, 정부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000명(학교당 40~150명)으로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학 전형 시에는 특별전형, 지방인재전형 등의 규제를 덧붙이고 있다. 특별전형 제도의 경우 취약계층을 입학전형의 5% 이상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내년부터 7%로 확대 선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인재육성법으로 인한 선발 역시 입학정원의 20%(강원대와 제주대는 10%)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의 입학 시에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방대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변호사시험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합격자를 정원제로 결정하니 이들은 로스쿨에 입학하였다가 오히려 낙오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리다보니 변호사시험 탈락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214명이던 변호사시험 탈락자가 2015년에는 996명, 2017년에는 1,510명으로 2012년 대비 6배(1,296명)나 증가하였다.

셋째, 로스쿨의 교육과정에는 특성화, 전문화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원제 방식만을 고수하여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학생들은 특성화나 전문화보다 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문화를 위한 선택과목 간에도 난이도, 출제범위 및 학습 분량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합격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본다. 이로 인하여 특정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것은 법조인의 전문성 강화라는 로스쿨의 취지와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원제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정부와 로스쿨평가기관인 법조단체는 로스쿨에 대한 제재와 비판만 할 뿐 지원과 협조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점검, 평가, 입학전형 요소 및 방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등 로스쿨을 규제하는 정책만 있을 뿐 진정으로 로스쿨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섯째,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은 철저히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인 의과대학도 학생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부분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에서도 학생이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법조단체는 기득권 침해를 우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는 수급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배출된 법조인의 수는 총 2,481명(변시 합격자 1,451명, 사법연수원(사시 합격자) 1,030명)이었지만, 5년이 지난 2017년에 배출된 법조인의 수는 1,800명(변시 합격자 1,600명, 사법연수원 200명)으로 37.8%나 감소했다. 정부는 전체 법조인의 배출이 수년간 해마다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은 1500~1600명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자격시험의 취지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데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6개월간 실무연수를 그동안 실무연수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에서 주관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과목도 종전 사법시험보다 많으므로 학생들의 시험과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형 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연수원 연수과정으로 대체하며, 전문법 분야인 선택과목의 시험은 학점 이수제로 전환하여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게 특성화 과목과 전문분야 과목의 이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단체의 일부 관계자는 미국 변호사시험 역시 60% 이하의 합격률을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주에 국한된 것이고, 51개 주 전체의 평균은 7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주도 11개나 된다. 우리나라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원제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現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現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前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법률시장 개방 : 현황, 전망, 그리고 법학교육에의 시사점

천경훈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시장 개방 또는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 법률시장이 개방되어도 대부분의 한국 변호사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느긋한 입장도 있고, 안 그래도 팍팍한 변호사 업계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입장도 있으며, 오히려 한국 변호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입장도 있다. 어느 쪽이 옳을까? 법률서비스의 국제화는 로스쿨 학생들의 삶, 그리고 로스쿨 교육과는 무관한 일일까?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의미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미국과 EU의 경우 전체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의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다(EU 2016년, 미국 2017년). 이것을 두고 ‘법률시장 완전개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다.

제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었다. 제2단계로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허용했다. 제3단계로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이 합작투자기업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3단계에서도 외국 로펌이 직접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한국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3단계 개방은 ‘완전개방’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일부 개방에 불과하다. 실제로 합작투자기업 형태로 진출한 외국 로펌은 아직 없고, 모두 1단계 때 설치한 사무소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전망

그렇다면 법률시장 개방은 역시 별 것 아니고 그 효과도 미

미한가? 그렇지 않다. 양자간 협정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보다 훨씬 일찍부터 이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는 치열한 국제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법률서비스는 국경을 넘는 모습에 따라 ①국내, ②인바운드, ③아웃바운드로 나뉘볼 수 있다. ①은 거주자(내국인)의 한국 내 활동에 관한 법률서비스이다. 주로 한국법이 적용되고, 고객과의 소통과 실질업무가 모두 한국어로 수행된다. ②는 비거주자(외국인)의 한국 내 활동에 관한 법률서비스이다. 주로 한국법이 적용되고 실질업무는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고객과의 소통은 외국어(주로 영어)로 이루어진다. ③은 거주자(내국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법률서비스이다. 고객과의 소통은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지만, 주로 외국법이 적용되고 실질업무는 해당국의 언어로 이루어진다.

흔히 우리는 위 ①만을 법률사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법과대학에서든 사법연수원에서든 로스쿨에서든, 한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한국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가르치고 외우고 평가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이 많아지면서 ②와 ③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국내 로펌 및 변호사의 매출은 대략 4.6조원으로 추산되는데(부가가치세 신고액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체는 더 클 수 있다), 이 중 인바운드 0.9조원, 아웃바운드 0.2조원 정도로 추측된다. 외국 로펌들도 한국 기업으로부터 주로 아웃바운드 서비스 대가로 2016년에만 약 1.6조원을 받아갔다. 즉 국내 변호사의 총매출과 외국 변호사의 한국총매출을 합한 6.2조원 중에서 우리가 전부인 줄 아는 순수 국내 서비스 매출액은 약 3.5조원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 로펌이 내국인으로부터 받아간 보수액(주로 아웃바운

드)은 법률서비스 輸入(1.6조원)에 해당하고, 국내 로펌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보수액(주로 인바운드)은 법률서비스 輸出(0.9조원)에 해당한다. 그 차액 0.7조원이 법률서비스 국제수지 적자로 잡힌다.

한국 변호사의 경쟁력과 국제화 수준이 향상되면 법률서비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서 국제수지 적자가 감소할까? 원칙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훨씬 많은 자본순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활동이 활발할수록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상당 부분은 대상국 법원과 관청을 드나드는 일이므로 한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해외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된다면 한국 변호사의 실력과 무관하게 법률서비스 국제수지는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을 세우는 총지휘자로서의 역할은 한국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각국 경쟁당국을 상대로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하는 업무는 각국 변호사들의 몫이지만, 이른바 ‘메인카운슬’로서 전체 전략을 세우고 감독하는 역할은 대개 미국 로펌이 수행한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한국 로펌이 메인카운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역할을 영미 로펌에 많이 빼앗기고 있고, 그것도 법률서비스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 이전에도 이미 벌어지고 있던 일이지만, 이제 국내에 사무소까지 둔 외국 로펌들은 이를 마케팅 거점으로 하여 아웃바운드는 물론 인바운드까지도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부문의 경쟁이 격화되어 국내 대형 로펌들이 국내 중소기업 송무까지 더 적극적으로 수임하게 되면, 결국 개방의 효과는 전체 변호사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법학교육에의 시사점

이처럼 이미 법률시장은 국제화되었고 경쟁에 노출되어 있

다. 이 시장에서 일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판례에 대한 지식과 전형적인 문서 기안 능력이 결코 아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 변호사들에게 외주를 주면 그만이고, 그나마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쟁점을 인지하고 정확한 질문을 제기하는 능력, 고객의 정서와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능력,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포함한 여러 정보에 기초하여 고객의 전략적 판단을 돕는 능력 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필자는 대륙법계 변호사들보다 법률 지식이 훨씬 부족한 영미 로펌 변호사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더 신뢰를 받으며,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법률지식이 덜 완벽하고 법률가 특유의 논리에 덜 젖어있다는 점이 오히려 고객과 같은 눈높이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소통하는 힘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3년의 로스쿨 기간 동안 그런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어려운 것이나, 적어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판례와 기재례를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현재의 변호사시험 출제 방식과 이른바 ‘실무교육’은 그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영미 변호사들 이상으로 국제무대에서 활개 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은 판례와 기재례로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수험서와 요약집 너머에 더 큰 세상과 더 큰 시장이 펼쳐져 있음을 깨닫고, 직관·상식·패기 등 원래 가진 미덕을 다치지 않고 씩씩한 법률가로 성장하면 좋겠다. [▶](#)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서울대에서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LL.M, 다시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군법무관을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M&A 및 공정거래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서울대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과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에 특히 관심을 두고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펴냈고, 상법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을 지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지난 2월 8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의 본선과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법전원팀(최우수상), 경북대학교 법전원팀(우수상), 인하대학교 법전원팀(우수상), 충남대학교 법전원팀(장려상), 영남대학교 법전원팀(장려상), 서울시립대·인하대 법전원 연합팀(장려상)이 수상하였다.

**웃음꽃 핀 졸업식,****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 및 대학 총장을 비롯해, 교수, 학부모, 졸업생 등이 참석해 지난 3년간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 법조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새로이 법전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학식도 열렸다.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일시: 2018년 7월 15일(일)

원서접수: **2018년 5월 29일(화) 09:00 ~ 6월 7일(목) 18:00**

성적발표: 2018년 8월 23일(목)

- ※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됩니다.
- ※ 자세한 공고는 홈페이지(<http://info.le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신규코너소개

5월에 발간되는 〈로스쿨창 5-6월호〉에서는 법학적성시험(LEET) 문제와 해설이 담긴 코너와 로스쿨 원장님들의 특별기고 코너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법률사무소 다음
김연기 변호사

들어가며

처음 ‘로스쿨 창’으로부터 기고를 부탁 받았을 때, 그 자체로 영광되어 이를 수락하였지만 그 후 걱정이 계속 앞섰다. 로스쿨 창 의 독자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이거나 재학 중인 후배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글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부족하지만 글로라도 선배 노트를 하려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너무 뻔하거나 입에 발린 얘기만을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냉철한 조언을 한다는 변명으로 비관 가득한 얘기를 하는 것 역시 싫다. 이런 고민과 주저로 쓰는 글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조심스레 글을 써본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면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어쩌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어떤 로스쿨을 나왔느냐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좋은’ 로스쿨이 무엇이냐에 대해 논한다면 각자의 기준도 다르고 논쟁만 심해질 수 있으니 각자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가고 싶은 로스쿨의 순으로 ‘좋은’ 로스쿨이라고 해보자.

어느 정도 일반화하면 ‘좋은’ 로스쿨을 나오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평가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대형 로펌이나 삼성 등 대기업의 인턴 기회도 얻을 확률이 높고, 검찰의 심화실무수습(이 과정을 거쳐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에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높으며,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취업을 할 때에

도 아무래도 서류 통과가 될 확률 역시 높다. 각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수업의 질과 무관하게 단지 간판만으로 위 기회가 증가하니 아무래도 간판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법하다.

학점 역시 중요할 수 있다. 나는 날씨 좋은 봄에는 잔디밭에서 중국 요리를 시켜먹고, 강의실 바로 아래층의 학회실에서 시간을 죽이면서 대리출석을 부탁한 학부 생활을 보냈다. 후배님들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데 지금까지 운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로스쿨 1학년 1학기 학점은 3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었다.

그런데 대형 로펌의 인턴 선발(이는 보통 채용전제로 이뤄진다)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대부분 이뤄진다. 그리고 이 때의 지원에 제출할 성적은 1학년 1, 2학기의 성적뿐이다. 한편 로스쿨 1학년 1학기의 학점은 2학년 1학기가 되어야 재수강이 가능하다(요즘은 재수강 제도가 어찌 되는지는 모른다). 즉 1학년 1학기의 성적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대형 로펌의 인턴과정에 선발되기는 아주 어렵다(그 이전에 ‘간판’의 문제가 있기도 하다).

물론 2학년 겨울방학 때도, 3학년 여름방학 때도 채용전제의 인턴을 선발하는 대형 로펌이 있기는 하다(현재도 그러한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큰 기회는 2학년 여름방학 때이므로, 1학년 1학기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면 모를까, 로스쿨에 입학하였다는 기쁨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즐거움이나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등에 함몰되어 1학년 1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 학점 등의 스펙도 아니고, 객관적 스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정신승리’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3년의 로스쿨 생활은 이 소리를 듣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

학기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하지 못한 채 1학기를 보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

막상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여기까지 글을 보면 결국 학교와 학점, 즉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하면 로스쿨 입학 전 갖췄던 소위 ‘스펙’ 역시 중요할 수 있다. 애써 숨길 필요도 없다. 다들 알고는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로스쿨 졸업생의 90% 가량은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의 어쏘, 대기업의 사내변호사가 되지 못한다.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가 그렇다. 그럼에도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면서나 재학하면서는 대부분 위 진로를 고민하고 희망한다. 아무래도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있느냐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물론 부족한 나만이 그리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편 로스쿨 재학 중에는 대부분 연봉이 얼마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대단한 목표로 생각하기도 한다. 누군가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본인의 목표를 삼는 것이다. 근거 없는 나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는 IMF를 거치면서 ‘고개숙인 아버지’를 경험하였고, 학습된 패배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장래를 걱정하고 비관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변호사는 홀로 자유로운 직업이다. 어떤 조직에

속해야 빛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왔느냐에 따라 빛나는 직업이다.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며, 엄청난 부자는 될 수 없어도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고, 한 가정을 건사하기에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거기다 일의 내용에 따라 얼마의 돈을 버냐를 넘어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즉 앞서 언급한 좋은 진로가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개업변호사가 된다면 학벌, 학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손님들은 대부분 소개를 통해 오거나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오게 되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를 보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물론 손님이 일단 변호사를 찾은 다음에 변호사가 나온 학교 역시 보는 경우는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학교의 문제로 일단 온 손님이 다시 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호사가 된 후 어떤 사건을 얼마나 해봤느냐다.

그러니 결국 구조적 문제로 일반 변호사가 될 대부분의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학교든 학점이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인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급적 단번에 진학이 수월한 로스쿨을 지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로스쿨 재학생이라면 학점을 소홀히 하지는 말되 과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보다 중요한 목표를 위해 학업의 계획을 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

내가 앞서 말한 내용이 학교, 학점 등은 전혀 신경 쓸 것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법원, 검찰 등의 재조가 좀 더 선호되는 진로인 이유는(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질이 좋은 사건 역시 경험할 수 있어 법조인으로서 본

인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나는 소위 질 좋은 사건을 경험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질이 좋지는 않은 사건이라고 하여 난이도가 낮거나 품이 덜 드는 것은 아니다. 이래저래 고생할 것이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법이다.

한편 개인으로 자유로운 경우 더 이상 스스로를 다그쳐 발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다. 하던 대로 해도 적당히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상승욕구를 발휘하여 고생을 사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 생활이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좀 더 높이기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니 결국은 본인의 희망이 어떠한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좋은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을 미리부터 저버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개로 본인이 목표하는 바가 앞서 언급한 좋은 진로로 맞춰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사법시험 준비를 하였기에 별다른 스펙도 없었고, 사법시험에 실패하였다는 생각을 하였기에(지금 생각해보면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달리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로스쿨 입학만으로도 무척 감사하였고, 모든 것은 덤이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다.

그런데 다른 로스쿨 동기들은 나와 달리 아주 우수하였고, 상승욕구 또한 대단하였다. 그러한 과정과 분위기 하에 있다 보면, 마치 누구나 대형 로펌의 인턴을 목표로 해야 하고, 법원·검찰의 심화실무수습 과정에도 지원을 꼭 해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되게 된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끌려

간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다. 결국 나 역시 대형 로펌의 인턴 과정도 거쳤고, 검찰의 심화실무수습 과정도 다녀왔으며, 대기업에도 면접을 봤었다. 로스쿨 입학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전혀 이렇 것은 아니었다. 진로에 고민 없이 그저 좋다고 하니 목표한 것이었다.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었으니 결국 결과만이 전부인 과정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왜 연연하는지 모르면서 결국 연연하게 되었다.

후배님들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빠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 좋다고 하여 내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목표하였던 과정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여 결국 지금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이 정말로 제일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 학점 등의 스펙도 아니고, 객관적 스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정신승리’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3년의 로스쿨 생활은 이 소리를 듣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

다분히 현실적이지 않은 조언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다. 반성하는 만큼 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김연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 졸업

법률사무소 다음 대표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상담변호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감사위원

수원시 영통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광명시 상담변호사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 - 개업변호사의 생활

법률사무소 대륜 대표변호사

전희정 변호사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뭔가 즐거운 삶,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리라 하고 기대했습니다. 마치 고3수험생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장밋빛 미래, 즐거운 캠퍼스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대였습니다.

제가 재학 중이던 로스쿨 2기 시절에도 이미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송무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이야기, 더 이상 변호사가 전문직으로 대우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자조적인 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고난 이후, 그 너머의 이야기들을 보며 걱정하기에는 당장 제 앞에 당면한 학교생활이, 학점이, 졸업이, 변호사시험이 급하여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고 눈앞의 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동기들은 송무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사내변호사, 공기업 사무관, 군법무관, 해외 변호사업 개척, 자문변호사, 기업임원, 벤처사업가, 전문투자자 등 다양한 직종으로 사회 각 부분 직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당시 눈앞의 시험들에 급급하였던 저보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로스쿨에 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후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자 계단으로 삼아 나가는 동기들의 선견지명에 뒤늦게 감탄하였습니다.

제 조건에서 개업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고향에서 학교를 나오고 고향에서 일

가를 이루신 부모님도 계시니 자연스레 고향인 대전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고,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사무실 경영이 가능하였습니다. 각종 송무로 사건을 마주할 때, 사건현장에 대하여 보다 빠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주로 부동산 및 가사사건 -에서는 현지의 경험, 지리 등을 파악하기가 수월하기에 사건의 접근도 보다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송무변호사로서, 그리고 개업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임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무변호사로 로펌에 고용되어 있거나,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최장 6-8년 이후에는 결국 본인의 사무실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결국에는 수임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재능이 됩니다.

개업변호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개업변호사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시간활용의 자유로움입니다. 본인의 시간관리와 사건관리만 잘 된다면 직장인으로서의 시도하기 힘든 자유로운 여행과 여가생활이 가능합니다. 출산, 육아 등의 문제를 일과 병행하여야 하는 변호사님들의 경우 특히 이 부분이 큰 장점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도 개업 이후 시간관리를 하면서 매년 3-4회의 장거리 여행을 시도하고 여가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꿈꿀 수 있는 장점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자

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맞이하게 되는 의뢰인이 외에는 사무보조 직원들만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 하는 변호사라고 알려지면 사건과 의뢰인은 자연스레 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개업변호사의 장점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개업하지 않는 이상, 법인이거나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라면 원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서면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변론하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사건이 아닌 일들, 본인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들일지라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개업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사건, 의뢰인과의 상성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적절히 거절하여 돌려보낼 수 있고, 하고 싶은 사건을 맡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그렇게 진행한 사건이 희망했던 결과대로 선고받는 경우의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업변호사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무실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에 관한 부담입니다. 사무실 관리비 및 임대료, 직원월급 및 4대보험료, 각종 집기 임대료, 세금 등을 합하면 적어도 두 세건의 사건 선임료가 유지비에 소요됩니다. 매 월 세 건 이상을 선임하지 못하면 일을 하면서도 변호사 자신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지요. 고용된 변호사이거나 직장의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는 고정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므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개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꼭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사건수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사건을 수임해야 하고, 신건 의뢰인과 상담도 해야 하며, 진행사건 의뢰인과 사건진행에 대한 상담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많아지고,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상담만을 하고 선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담을 열심히 해 주는 경우에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만 받고 스스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홍보하고 있고, 무료법률상담 및 나홀로소송시스템의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에 나날이 당사자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각종 사회모임에 가입하여 친분을 쌓고 잦은 음주, 골프, 모임여행 등을 합니다. 선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생활일수도 있으나, 이 경우 사건관리 및 서면작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변호사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시간활용의 자유로움입니다. 본인의 시간관리와 사건관리만 잘 된다면 직장인으로서는 시도하기 힘든 자유로운 여행과 여가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관리의 어려움, 검은 유혹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변호사업계에서 사건수임에 대한 부담감은 날로 늘어가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기존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변호사의 초임 급여와 평균 급여가 낮아지면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의 직역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또한 사무장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면사무장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사무장들은 본인이 사건을 가져올테니 수익을 나누자고 흔히 제안합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수익분배비율도 점점 사무장이 높은 비율로 가져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특히 초년차 개업변호사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변호사들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편승하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으로 처벌받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고 변호사 자격박탈로 이어집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사건선임료에서 수수료를 주게 된다면, 사무실 유지비용,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로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없게 됩니다.

로스쿨 재학시절, 그리고 수습 변호사 시절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제 경험에 기초하여 짧게 풀어보았습니다. 치열한 로스쿨 재학시절과 방황하던 수습변호사시절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였습니다. 재학생 후배님들의 진승을 빕니다. [창](#)

전희정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박사 과정 중
대전에서 법률사무소 대륜 운영중. 대전고등검찰청 상소심, 상고심의위원회, 대법원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활동중입니다.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24진) 파병 후기

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해군법무관
배연관

아덴만과 청해부대

지구본을 돌려 보면 한반도에서 출발해 대만과 필리핀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나서도 인도를 넘어 아라비아에 도달해서야 있는 멀고 먼 뜨거운 바다가 아덴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부터 멀다고 해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바다는 아닙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약 20%이상이 수에즈 운하와 아덴만을 거쳐 들어오며 그 곳에는 우리 국적을 가진 상선과 어선 그리고 우리나라 선사 소유의 선박들과 우리 선원들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잇기 위해 밤낮 없이 고독하고 막막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선박,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아덴만에 상주하는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청해부대입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3월 13일 1진이 파병된 이래 우리 상선 467척을 비롯한 약 2200척의 선박들을 호송하였고, 우리 선박 10,307척을 비롯한 13,000여척의 선박에 대하여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등 아덴만의 수호자로서 이름을 떨쳐 왔습니다. 특히 2011년 1월에 있던 ‘아덴만의 여명’ 작전 성공으로 납치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조하고 해적을 사살 및 체포하는 큰 전과를 올려 아덴만 해역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의 파병에 법무참모로 자원하여 활동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배연관 해군법무관입니다. 다른 변호사는 하기 힘든

함정복무와 파병이라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지면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출항과 함정 생활

저희 청해부대 24진(대조영함)은 2017년 5월 2일 출항하였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날이 떠오릅니다. 부산 작전기지에서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의 주요 제독들 앞에서 파병 신고를 하던 저와 청해부대 전대원들의 모습, 현문을 오르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던 가족들의 눈시울, 흰 정복을 입고 우현에 서서 참모총장께 하였던 대함경례, 출항과 동시에 올려퍼진 군함 행진곡과 찢을 듯한 디젤기관의 기적 소리,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과 다른 법무관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마음 한켠이 다시 울컥합니다.

바다에 나온 이후부터는 바다에서의 관습과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배우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바다에서의 유일한 생활 터전인 함정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기에 많은 지시와 제한이 뒤따랐고 항상 방송 구령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세탁과 샤워시에도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언제든 풍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 사물은 줄이나 테이프로 항상 고정했으며, 매 시간 철저한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시간대가 변경되는 경우 격실(방)마다 조정 요원을 배치하여 집행 구령에 맞춰 시간

을 정시에 맞추는 것은 원양 항해에 나가는 해군 함정에 서만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준수사항 외에도 해군이 지켜야 하는 예절도 공부할 것이 많았습니다. 해군은 바다에서 다양한 외국 상선 및 군함과 마주칠 수 있고, 많은 나라의 항구를 들르기 에 모든 나라의 해군에서 관례로 받아들이는 함상 예절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타국 군함은 다른 나라의 영토와 같기 취급하기에 맞이하는 측과 방문하는 측 모두 의관을 정제하고 해군 정복이나 근무복 차림으로 방문해야 하며, 귀빈에 대해서는 영송병을 배치하여 귀빈에 대한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장이나 도선사와 같이 항해와 조함의 지시를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함시에 타종을 하고 함장의 자리는 누구도 앉아서서는 안되는 등 함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기항 중에는 장교로서 부사관과 수병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나라의 귀빈을 맞이하거나 타국의 시설을 방문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정복과 근무복을 항상 세탁해서 줄을 잡아 다림질해서 입고, 영어 사용이나 품행은 절도있고 정확하게 함으로써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전대장님을 비롯한 경험 있는 해군장교들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초대 해군참모총장이셨던 손원일 제독께서 해군 장병에게 바란 ‘국제신사’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함정 복무 중 배운 이러한 만국 공통의 예절과 교양은 청해부대에서 뿐 아니라 지금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에서 군법무관의 역할

육지는 잠들어도 바다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바다로 나옴과 동시에 대조영함도, 우리 24진 전대원들도 모두 바빠졌고 저 역시도 군 법무관으로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기상과 해양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함교에는 항상 당직자가 배치되어 상시 철저한 대비 하에 항해를 지시하였고, 기관실 당직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조영함에 동력을 공급했으며, 조리병들은 300명이 넘는 전대원들의 식사를 위해 쉬는 시간을 줄여 가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청해부대의 유일한 변호사로서 군법무관이 하는 기본적인 일(인권 고충 해소, 부대관리, 군검찰 업무 등)을 다 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제법과 해양법 문제에 대비하여 작전법 장교로서 대조영함이 지나는 해역마다 작전법 조언을 해야 했고, 법무장교로서 기항지에서의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거래법과 대한민국법 및 현지법을 검토하여 계약서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덴만 주변과 홍해는 국제해협으로서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함선이 통항하고 있어 법적 조언을 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가져간 자료도 한정적이며, 제한된 자료 수집 환경 속에서는 최적의 조언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해야 했고 판단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직역의 전대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덴만에 들어서 임무를 수행한 이후부터는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거나, 상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명시적인 법 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규정된 유엔해양법이나 국제 해양 관습법을 통해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야 했기에 고민의 정도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



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조작전 도중 청해부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던 한 일화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류 상선에 대한 구조 도중 우리는 승선한 사람 중 아들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찰 결과 의무참모는 폐렴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서둘러 상선을 예인 하여 안전한 항구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통역관이 아이 어머니가 “돌아가면 아이를 치료할 치료비가 없는데 돌아가봤자 방법이 없다”라는 걱정을 한다는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청해부대의 장교들은 자발적으로 검문검색대(UDT)대장과 의무참모(군의관) 통역관의 주도 하에 치료비로 약 300달러를 모금하여 전달하였고, 아이 어머니는 이정도면 치료비로 될 것 같다며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도중 모금을 한다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50달러 정도를 기부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기부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금한 돈이 충분했기를, 그리고 아이가 무사히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기를 기원합니다.

청해부대의 군사교류

해군이 자국 영해를 벗어나 공해나 타국 영해에서 작전을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다른 나라 항구에 기항하게 되고, 종종 다른나라 군함과 접촉하며 합동 훈련을 하는 등 타국과 군사교류(해군외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 청해부대 24진 역시 기항지와 아덴만에서 타국 함정과 군사시설을 방문하고, 귀빈을 초청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한 해군외교에 앞장섰으며, 대한민국 교민들을 대조영함으로 초청하기도 하였고, 특히 싱가포르 해군의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제관함식에서 한 함상 리셉션은 싱가포르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모여들어 대한민국의 문화를 훌륭히 표현하였다는 호평을 받고 성황리에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기항지에서의 이러한 군사교류에서 여실히 느꼈던 것은 각 나라의 해군에 대해 기항지 국민들이 갖는 관심의 정도가 방문국의 국력과 해군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천 톤 이상 되는 거함을 싱가포르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장병들이나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의하거나 기념품을 교환하자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해군기가 새겨진 뱃지와 미국 함정 장교의 계급장을 교환하거나, 브루나이 해군 모자와 태극기 패치를 교환하기도 하

였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약한 나라의 경우 오히려 자국 함정에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물 공세를 하고 장병들이 소개를 하러 돌아다니던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년 전 작은 군함에 해사생도들을 태워 순항훈련을 할 때는 저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나라의 힘에 따라 국민이 당당해지거나 비굴해질 수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가 바다와 기항지의 군사교류를 통해 느낀 것처럼, 해군력은 그 나라의 국민의 사기를 좌우할 수 있고, 길게는 국력에 직결됩니다. 자국이 본국에서 키운 전력을 해양을 통해 타국으로 투사할 수 있고, 타국의 자국에 대한 개입을 바다에서 저지함으로써 본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해양력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신장할 수 있는 것은 해군 뿐이고 해군력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도 이를 깨달아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진주목걸이 전략을 통해 해군력과 해양력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국력을 신장하고 강한 전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투사한 해양세력이 타국에서 협력을 받음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판단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을 분석하고 법률전에서 우위를



아덴만 주변과 홍해는 국제해협으로서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함선이 통항하고 있어 법적 조언을 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점함으로써 자국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타국을 납득시킬수 있어야만 합니다,

해양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법률전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할수 있을지의 여부는 군 법무관으로 활동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의 지평은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않고, 육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향후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하는 기회를 얻는 분들이 계시다면, 파병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그리고 21세기의 전장은 해상전 · 수중전 · 지상전 · 공중전 외에도 법률의 영역에서 법률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연관 변호사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사명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백령도 연평도 울릉도 등 격오지 및 대북 접경지에 대한 무변론 법률봉사활동 중 군 법무관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중 로리뷰 학생편집장으로 민법, 노동법, 인터넷 영역 등 다방면에 대한 논문을 써 왔으며 해군법무관으로 임관 후 청해부대에 자원하여 법무 참모로 활약하였습니다.

직장인의 늦깎이 로스쿨생 도전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민영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이드 많은 직장인이 어린 대학생들
틈에서 퇴근하고 매일 학원에 갔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상을 보내면서
항상 피곤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 김민영입니다. 저는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고 학생 때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 고시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꼈고, 이제는 취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랜 고시공부를 접고 사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의 시작이기에 많은 설렘과 기대로 늦은 나이에 사회초년생으로서 국가공공기관에서 경제 시장의 한 전문분야에 대해 심사,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해당 직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대민업무, 관련 분야의 제도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분야를 중심으로만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 실제 생활, 기업 등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발생할 위험을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일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을 하여 재직중인 회사의 관련 소송, 다른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자문 변호사와의 협업 그리고 위임

변호사에게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금 까지 이론으로만 공부해왔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절차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직접 수행하면서 하나 하나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작게나마 몇 개의 소송과 관련 회사의 기업 회생절차 등을 직접 준비하고 수행하면서 제 자신이 가진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대기업들의 경우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식이 있는 직원을 지배인으로 고용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저도 여러 건의 소송을 직접 대응하는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 할수록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자격의 부재라는 한계가 느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고시준비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을 준비했던 경험도 있었기에 그 준비과정이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준비를 하면서 저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공부계획을 세웠고 토익 학원을 등록하여 다니면서 우선 토익시험 점수를 확보하자는 생

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이드 많은 직장인이 어린 대학생들 틈에서 퇴근하고 매일 학원에 갔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상을 보내면서 항상 피곤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가끔 하곤 했는데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의 준비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강의를 신청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과 그 해설 강의를 듣는 것으로 준비를 하였으며 기출문제를 주말마다 혼자서 시간 안에 풀고 해설강의라도 듣고 오답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미흡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의 원서접수하고 서류전형의 발표하는 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면접시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스터디를 할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시사이슈와 뉴스를 눈여겨보면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해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 쪽의 의견만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중도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포기할 수 없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면접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 사회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지만 면접시험 답변을 하면서 많이 떨었습니다. 많이 떨면서 답변하다가 정리도 안되고 하기에 다시 답변해도 되냐고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였고 마음을 가다듬고 저의 생각을 다듬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답변이 정답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면접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준비는 다른 동기 입학생들보다 부족하지만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작은 노력이 좋은 결과를 얻어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 회사의 법무담당업무를 하면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많은 교훈을 얻어 저의 업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점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수월한 문제해결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학생이 되어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 만큼 많이 설레고 기대도 됩니다. 빨리 학교생활에 적응해서 동기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원 생활이 기다려집니다.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오는 3월에 저의 법조인이 되는 첫발걸음이 시작된다는 점이 무척 기쁩니다. 그 한걸음 한걸음이 앞으로의 저의 나아가갈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고 두서없이 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로스쿨러’는 불가능한 명제인가? –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서, 지치고 망가지는¹⁾”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하영



결론적으로 ‘행복한 로스쿨러’는
가능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다만 로스쿨에서 경험하는
다른 것들도 다 어렵지만, 거기서
행복해지는 것은 그 이상 어렵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스쿨 어때? 좋아?”라는 질문에 대하여

1년의 휴학기간을 포함해 총 4년간의 로스쿨 생활 끝에 내가 얻은 것은, 가까스로 가방끈 연장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졸업장(증제1호)이다.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는 5월에는 변호사 자격증(증제2호)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허락이 매우 간절한 상황이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잃은 것이 있다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유머감각’을 잃고 싶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각종 웃음코드가 삭제되어버린 자리엔 애석하게도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능과 토론 기능만이 남은 듯하다. 그마저도 완벽하지는 않은 게 문제이지만.

어쨌거나 그 탓인지 나는 “로스쿨 어때? 좋아?”라는 지인들의 짧은 질문에 (그것이 그저 사교상의 단순한 안부인사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길고 지루한 답변을 내놓고도 스스로의 유머에 만족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로스쿨에 오길 참 잘했다’와 ‘로스쿨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았다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두 명제 모두 다 ‘참(True)’이고 병립이 가능해. 웃음 포인트는 놀랍게도 두 명제가 모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있지.” 따위의 답변 말이다.

이 글은 그 답변을 좀 더 구체화해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 답변은 “오길 잘했다”와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로스쿨 어때? 좋아?”라는 질문이 “로스쿨에서 너는 행복했니?”라는 의미라면, 구조적인 불행이 예견되는 곳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했다고 답하고 싶다.

‘구조적인 불행’을 예견하다

우선, 나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장면들에서 ‘구조적인 불행’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Scene 1 날카로운 입학설명회의 추억

벌써 수년전의 일이지만, 내가 졸업한 로스쿨의 입학설명회에서 내가 처음으로 들었던 학교에 대한 소개는 “여기는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고 두 번째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강렬하고도 선언적인 문장이었다.

당시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깜짝 놀랐는데, 첫째는 그 발화가 이루어진 맥락이 (‘입학식’이 아닌) 그저 입학‘설명회’일 뿐이라는 점에서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 학교 문턱을 밟아보기도 전부터 지원자들이 새겨 들어두어야 할 이야기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하는 점에서였다. 그건 마치, 소개팅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일 소개팅에 나

갈 거라면, 결혼 후 벌어질지도 모를 모든 최악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숙지하고 각오를 단단히 다져두는 게 좋을 거야, 그럴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소개팅은 꿈도 꾸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만큼이나 무겁고, 과도한 겁주기처럼 느껴졌다.

어쨌거나 나는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로스쿨에 입학하고 말았다. 실은, 로스쿨 입학 허가를 받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인 것처럼 느껴졌던 당시의 나로서는 그 놀라움에 대해 더 숙고해볼 여지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신분이 되기까지의 시간들은, 다들 예상했겠지만, 로스쿨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입학설명회에서의 저 강렬한 선언이 과도한 겁주기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친절한 안내문이라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과정이었다. 그 때 도망쳐야 했는데.

Scene 2 무시무시했던 환영 인사, “Welcome to Hell!”

로스쿨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년 입학시즌마다 신입생을 환영(?)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는데, “지옥에 온 걸 환영해요. (Welcome to Hell!)”라는 인사말은 빠지는 법이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입생 시절에는 그 인사말이 더더욱 반갑지가 않았는데, “내가 고생 끝에 온 곳이 지옥일 리가 없어!”와 같은 보상심리 때문이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을 먼저 겪어본 사람들이 특유의 허세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을 올려대는 것만 같아서 어딘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고 강의실과 사석에서 만나 뵈게 된 교수님들께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쩌다가, 여길 왔어요?”라고 물으시는 걸 보면서, 선배들의 저 환영인사는 으름장이 아니라 “만나서 반가워요.” 정도의 관용적인 인사말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구조적인 불행’의 진실

–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지치고 망가진다.”

실은 “예감”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그 불길함은 이미 현실이 되어 내 삶을 덮친 상태였다. 때는 전공필수 과목이 몰려 있는 1학년 1학기였고, 판례, 족지시험, 리포트, 발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발표 같은 것들이

나의 준비도와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닥쳐왔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닥쳐오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콜드 콜(cold call, 수업시간에 교수가 학생을 임의로 지목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것)’이었다. 학부시절보다 훨씬 뻑뻑한 시간표를 따라 수업에 출석하는 것만도 벅찼는데, 출석 후엔 콜드 콜을 당할 까봐 마음을 졸여야 했다. 판례 전문을 읽어간 날에도 콜드 콜은 달갑지 않았지만, 판례를 읽어가지 못한 날이면 강의 내내 말 그대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판례는 다 읽어가기로 다짐했다. 수업에 필요한 판례를 다 읽고 나면 녹초가 되어버릴 지경이었지만 말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판례는 내가 해야 할 공부의 일부에 불과했다.) 판례를 읽어가도, 읽어가지 않아도 나는 힘이 들었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미 나는 공부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지치고 망가지는 판에 들어와 있었다.

Case 1 공부를 해서, 지치고 망가진다.

– “Much study wearies the body.”

공부는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경고: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²⁾

여기에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더해지면 공부는 더욱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학점을 잘 받은 사람도, 진로가 확정되어 장래가 유망한 사람도, 변호사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한 듯 보이는 사람도, 불안과 피로를 호소한다.

1) 미국의 시인 찰스 부코스키(Charles Bukowski)의 「더 크런치(the crunch)」中 “people so tired/ mutilated/ either by love or no love.”라는 구절을 패러디함.

2) 원문은 “Be warned, ... much study wearies the body.”(NIV, Eccl. 12:12)

물론 나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지만, (참고로 내 성적표엔 다양한 알파벳과 +, -, 0가 골고루 등장한다!) 그들의 불안과 피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떤 과목에서 A+를 받은 유일한 학생이라는 (나도 잘 몰랐던) 사실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알려진 적이 있다. 동기들은 “그 과목 어려웠더니 다 엄살이었군?”하고 놀리듯 축하해주었고, 나도 그런 축하가 싫지만은 않았다. 나에게 해당 과목의 공부법을 물어오는 동기나 후배들도 있었는데 신선한 경험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학기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됐다. 다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그로써 내가 무능한 인간임이 곧바로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적은 성적일 뿐이고,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내겐 없었다. 나는 몸이 부서져라 공부했고, 만족스러운 성적도 얻었다. 하지만 성적을 확인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이제 다음 학기는 또 어떻게 해내지?”였는데 참으로 끔찍했다.

Case 2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지치고 망가진다.

—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은 찾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나도 한 때 그랬으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다. 처음엔 모두가 열심히 한다. 남들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면 나도 더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치른 시험에서 최하점을 받고 나면 무기력이 학습된다.

내가 그랬다. 수능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받아든 성적이 처참했을 때,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학습의욕은 바닥을 쳤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보다는 ‘공부를 안했더니 성적이 안 좋다’라는 편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웠기 때문이다.

오만한 애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로스쿨러 대부분은 로스쿨 입학 전까지는 적어도 공부에 관한 한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교훈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경우가 많다. 투박한 분류법이지만 간단히 말해 학부시절 평점도 좋고 LEET도 잘 치른 사람을 모아놓은 집단이 로스쿨 아닌가. 부끄럽게도 나 역시 로스쿨 입학 전까지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간단한 사실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학업에서의 작은 좌절에도 내 마음은 요동쳤고 나는 쉽게 무기력을 학습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공

로스쿨에서 법학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에도 그러한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행복할 때, 학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부를 하지 않아서,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지치고 망가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버렸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일단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나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서른이 넘는 나이에 사춘기 시절보다 더욱 대차게 방황하고 있었다. 사춘기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는데, 방향이고 반향이고 다 좋은데 그 무대가 로스쿨이라는 점이 통탄할 노릇이었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곳에서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행복해지고 온 곳에서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다. 대찬 방향 끝에 나는 ‘로스쿨을 떠나서 행복해질 것인가, 로스쿨에서도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에 이르렀고 결국 로스쿨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로스쿨’이라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만 했다.

1. 엄청난 실패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별 것 아니다. 중요한 과목에서 C-를 받거나, 학사경고 혹은 유급을 당할 위기에 있다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할 수도 있고 인생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생각보다 별 일이 아니다. 여전히 내일의 해는 뜨고, 만회할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기보다 남의 일에 큰 관심이 없다.

개인적으로, 로스쿨에서 경험한 크고 작은 실패들 앞에서 마음을 다잡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도움이 되었다. ‘만일 로스쿨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불행했을까? 그렇지 않다. 로스쿨에 오지 않았어도 잘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로스쿨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로스쿨은 생각보다 별 게 아니고, 여기서의 실패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너무 불행하다면 언제든 그만 둘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언제든 그만 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2. 좌절과 실패의 경험은 유익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교훈을 배우는 과정은 쓰라리지만, 하루라도 더 어릴 때 배워두는 게 유익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역력을 미리 키워두는 게 좋다. 로스쿨은 좌절과 실패를 배우기엔 최적의 장소이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견이지만 ‘해도 해도 안 된다’ 류의 실패는 자신의 한계에 끝까지 도전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만의 고민이 아니다.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과장을 조금 보태면) 로스쿨러 중에 “나만 이런가봐”라고 혼자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된다.

4.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공부기계처럼 공부만 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지치면 능률이 떨어지고 오류를 낼 수도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는 게 좋다. 효율이 떨어지고 자꾸 실수를 할 때엔, 자신을 매섭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잘 쉬어야 한다. 쉴 때엔 죄책감 없이 푹 쉬는 게 유익하다.

5. 지지집단이 필요하다. 가족, 친구, 연인, 전문상담자 등 당신을 무조건 지지해줄 사람이 있으면 고된 로스쿨 생활을 버티기가 조금 수월해진다. 지지집단 없이 혼자 힘으로는 위의 1~4와 같이 생각하기가 힘들 수 있다. 나 역시 “로스쿨이 그렇게 힘들면 그만뒀도 괜찮아, 네가 행복한 게 중

요하지.”, “성적 좀 안 나오면 어때, 못해도 괜찮아.”라고 끊임없이 지지를 보내준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위의 생각들에 이를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지지집단은 로스쿨 밖에서 구하길 권한다.

6. 어제보다 나아진 나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다.

‘남보다 나은 내 모습’이 아닌, ‘어제보다 나아진 나’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다. 타인과의 비교는 무익할 뿐이지만 자신의 발전을 관찰하는 것은 즐거운 과정이다. 나는 아직도 로스쿨에서의 첫 시험을 치를 때의 악몽을 가끔 꾸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시험지를 채워야 하는 로스쿨의 시험 방식이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웠던 탓이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서 백지를 내면 어쩌나 걱정을 심하게 했고 실제로 어떤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험문제가 나와도 뭐라도 채워 쓸 수는 있게 되었다. 그 답안이 만점짜리 답안은 아닐지라도, 백지를 땀과봐 두려워하던 수준은 벗어났다는 점에서 나는 예전보다 나아진 자신에 만족하고 뿌듯함마저 느낀다.

‘행복한 로스쿨러’는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로스쿨러’는 가능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다만 로스쿨에서 경험하는 다른 것들도 다 어렵지만, 거기서 행복해지는 것은 그 이상 어렵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시 로스쿨에서 법학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에도 그러한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행복할 때, 학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이유는, 로스쿨(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로스쿨러가 행복한 로스쿨러가 되길 조심스레 바라본다. [창](#)

지난 1월, 영하의 기온이 연일 계속됐지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 KMCC)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9회를 맞이한 대회의 현장을 찾았다. editor. 박소희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그것이 알고 싶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 KMCC)는 현직 법관 앞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가지고 원·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인으로서 사실상 실제 재판과 동일한 경연을 펼치는 대회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대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꼽히며, 올해 초 진행된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법전문대에서 115개팀, 345명이 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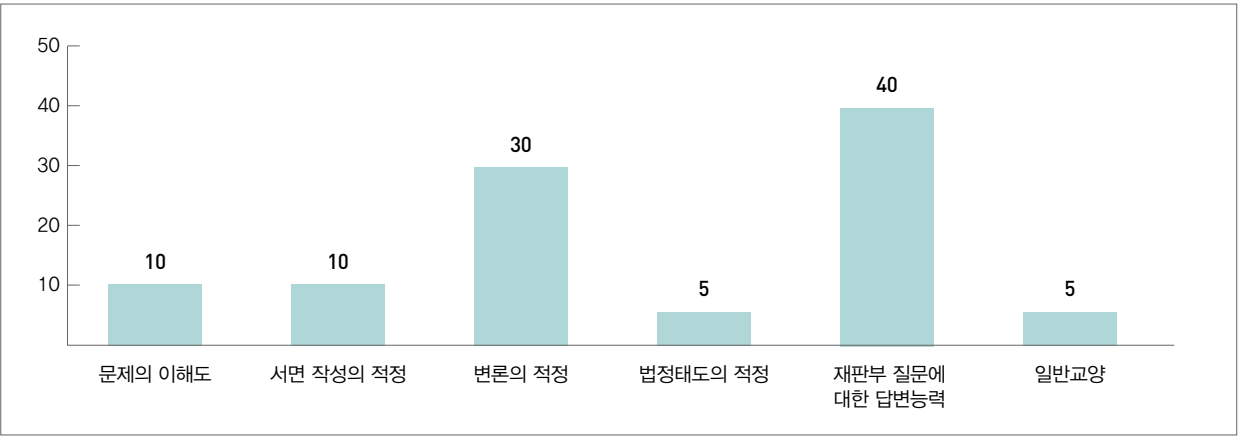
대회 흐름도

예선 (서면심사)	참가팀은 문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서면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다. • 대회집행위원회는 예선(서면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팀을 확정한다.		
	〈제9회〉 민사재판 63개팀 출전 형사재판 52개팀 출전	예선 통과	민사재판 36개팀 형사재판 36개팀
본선	• 변론 기일 전 서면 제출 – 본선 진출 팀이 확정된 후 본선 문제를 경연팀에게 송부하면, 경연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을 모두,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변론기일 전 서면 교환 – 대진표에 따라 경연 팀의 지위가 부여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본선 경연 변론을 위한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화상자료(PPT)를 제출한다. • 변론기일 – 경연 분야별 6개 팀 이하를 1개 조로 편성하고, 1개 조별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한다. • 평가 – 제출된 서면과 PPT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변론을 평가하고, 각 조별 1위팀은 결선에 진출한다.		
	〈제9회〉 민사재판 36개팀(1조에 6개팀) 형사재판 36개팀(1조에 6개팀)	본선 통과	각 조별 1위팀 결선 진출
결선	본선 경연일 오후에 본선 결과에 따라 결선 진출 팀을 발표한다. • 대진표에 따라 결선 경연 전(1시간 이내)에 결선 경연 팀에게 그 지위를 고지하고(원고·피고 또는 검찰 측·피고인 측), 본선에서 제출된 상대방 서면을 교부한다. • 변론기일 – 결선 경연 변론기일은 본선 경연일과 같은 날 오후에 지정되고, 경연은 대화장이 지정하는 법정에서 진행한다. • 평가 및 시상 – 결선에서는 PPT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구두 변론 중심으로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변론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인다. 각 경연 분야별로 1위부터 6위 팀까지 시상하고, 이와 별도로 각 경연 분야별로 개인 최우수상을 시상한다.		

제9회 경연대회 문제

제9회 경연대회의 민사부문 결선에서는 ‘기자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토대로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진위 확인을 한 후 익명의 연에게 관계자로부터 전해졌다는 형식의 추가 보도를 했지만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가 보도를 한 언론사·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법인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등이 출제됐다.

평가요소 배점 비율(결선)



평가 요소에 '절차 준수의 적정'도 있지만 '감점제'로 운영됨.

제9회 수상자 명단

구분	순위	상의 명칭	명단
팀	1	가인상	민사-서울대(백대열, 송희권, 이하은) / 형사-충북대(유동열, 임영빈, 이정용)
	2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민사-고려대(김예지, 이규찬, 성현창) / 형사-인하대(박동엽, 이현희, 김고운)
	3	법률신문사장상	민사-충남대(전항록, 김보희, 윤수진) / 형사-연세대(심다은, 우가현, 차용면)
	4	자유상	민사-서울대(박준범, 공다훈, 류상우) / 형사-서강대(이민철, 김상식, 김수창)
	5	평등상	민사-영남대(최대건, 최서희, 김현태) / 형사-서울대(오수비, 김정민, 박준민)
	6	정의상	민사-경희대(김희원, 김민호, 송호섭) / 형사-이화여대(정지은, 김민정, 김한라)
단체	개인최우수상		민사-서울대(백대열) / 형사-인하대(이현희)
	1	자유상	서울대학교 법전문원
	2	평등상	인하대학교 법전문원
단체	3	정의상	중앙대학교 법전문원

민·형사 부문 각 결선 진출자 36명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추천권이 주어지며, 재판연구원 선발 시 서류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인상 수상팀에게 듣는 가인 법정 변론경연대회 뒷이야기!

Behind Story

Q.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민사팀: 사실 아직까지도 잘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법의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와 관련한 좋은 경험을 쌓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승이라는 과분한 영예를 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이런 영예를 주신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률가의 사명’이라는 초심을 간직한 채로 겸손하게 계속 노력하라는 격려인 만큼,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팀: 본선 진출만으로도 뿌듯했는데, 예상 못 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민사부분 수상팀 : 서울대
(이하은, 백대열, 송희권)형사부분 수상팀 : 충북대
(유동열, 이정웅, 임영빈)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민사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판례가 없는 사안’이 반드시 출제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기계적인 암기만으로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학설 및 판례의 배경이나 취지, 나아가 전체 민사법의 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학기 중에도, 대회 준비 기간에도, 항상 단지 판례의 문구를 암기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전문을 읽으며 그 뒤에 놓여 있는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항상 빠듯한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대회가 끝난 지금 돌이켜보니 법학을 처음 배우는 초심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문제가 출제되며, 사안에 바로 적용되는 판례나 이론이 없기 때문에 나름의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조사하면서 생각해 낸 논리에 오류가 있거나 쉽게 반박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Q. 서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민사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학설 및 판례를 기계적으로 기술하는 대신 사안에서 도출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팀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쟁점들을 다룬 주요 판결들의 전문을 읽어보는 것과,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우수준비서면들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작업에 충실하였습니다. 나아가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문서 일반의 작성에 있어 요구되는 형식적 기재례를 준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학교에서 사용되는 『법문서의 작성』 강의자료나 『요건사실론』 등의 교재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팀: 토론대회가 아닌 변론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 법리와 판례들을 각 검사와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논문 등의 학술자

료는 생각을 정리하고 논증의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 작성은 논점별로 분담해서 한 명이 조사하고 초안을 작성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검토·수정하고, 나머지 한 명이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한 명이 검토하여 어투나 표현 등을 통일했습니다. 서면의 각 부분에 팀원 모두가 관여했기 때문에, 조사해 가면서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해당 논점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지만 다른 팀원들도 논지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요 논거에 관하여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경연에서도 한 명에게 치우치지 않고 고루 분담하여 변론해서 이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본선과 결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민사팀: 본선에서는 여전히 준비서면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일차적으로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한 이후에는 발표자료(PPT)와 발표원고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으므로 핵심 쟁점을 소수 추려 이에 변론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발표원고가 준비되면, 이를 보지 않고 변론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결선에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주어진다고 약 1시간의 짧은 준비시간만이 주어지는 만큼, 1시간 내에 추가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이를 기존에 준비한 변론과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선 준비단계에서 미리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비중을 늘리거나 줄일 쟁점들을 분류해놓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형사팀: 주변론은 제출한 서면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재변론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측

의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경연 준비는 제출한 서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만 고민하면 됩니다. 본선 상대 팀의 서면을 분석해서 그 관점에서 우리의 주장을 비판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면으로 작성했던 논리를 구체화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답변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경연 중에 질문을 받으면 직접 서면을 작성했거나, 미리 토론하면서 정리 한 부분이 아니면 질문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PPT는 법조문과 판례원문 위주로 담아서 변론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키워드는 따로 굵게 표기하고, 목차와 제목만으로도 저희의 주장이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

민사팀: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1학년 과정은 기초법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교과서적인 사례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추상적인 것으로 다가올 뿐, ‘살아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실제로 살아 있는 사건을 다루어보면서 법은 결코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함께 살아 숨쉬며 현실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법률가로서 수행하게 될 실무에 대해 한층 더 큰 흥미를 갖게 된 것도 값진 소득이었습니다.

형사팀: 변론을 할 때 목소리의 톤이나 말하는 속도, 표정 등으로 인하여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면작성 과정에서 팀원 사이에서도 각자 공부방법이나 판례 및 이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각 장점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

개인 MVP 수상자 백대열 학생 미니미니 수상소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선 재판정에서 정말 많이 긴장했고, 분명 중간에 실수도 여럿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팀원 희권이와 하은이 덕분입니다. 연습 과정에서 발음과 자세를 꼼꼼히 교정해 준 희권이와 서면 준비 과정에서 풍부한 자료를 조사해 준 하은이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여 진심으로 행복했던 대회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

조비룡 교수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지난해 말에 독감으로 시작된 기침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속되자, 김부장은 여러 원인들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다. 폐암은 아닌지, 결핵과 같이 몹쓸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고 하자, 한편으론 안도감을 보이면서 혹시 미세먼지 때문은 아닌지 또 다른 우려 섞인 질문을 한다. 그런데, 그 다음 고혈압 진료를 위해 들어온 임여사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 최근의 혈압 상승이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냐는 거다. 최근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보가 지속되고, 이날은 이로 인하여 대중교통요금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이러한 질문과 걱정을 하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났다.

최근의 우리나라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들이 과장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농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거의 2배까지 더 높다. 높은 미세먼지농도는 폐렴이나 폐암과 같은 호흡기질환 뿐 아니라, 임여사 우려대로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들도 증가시켜 조기 사망을 일으킨다

는 것은 상당히 잘 밝혀져 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미국의 건강영향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예측되는 조기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는 26명으로 일본 13명, 프랑스 12명, 미국의 8명 보다 2~3배 더 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상태는 분명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여러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분명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더 자주 보도하고 있고,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라는 정부의 색다른 대처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에 실시된 여러 위험요인들에 대한 두려움 및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정도가 조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메르스, 광우병, 원전, 위해식품, 노후불안 등 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부장과 임여사처럼 많은 환자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과 질문을 하는 것이 진료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전반적 현상이라는 것이며, 실제로 비해 국민들의 걱정이 더 크다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대기오염 상황을 보면 1980년 이전에 비해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부장의 만성기침이나 임여사의 불안정한 혈압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김부장의 만성기침에는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흡연이 훨씬 더 큰 문제이다. 흡연이 지속되면 천식,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고 이들은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임여사의 경우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줄어든 신체활동과 이로 인한 몸무게 증가, 좋아

하는 짠 음식들, 자녀들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혈압 불안정의 더 큰 원인이다. 두 분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미세먼지 핑계를 대며 걱정하고, 정작 조절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분명 우리나라의 풀어야 할 숙제이다. 미세먼지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영유아, 고령자 등 건강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의 상황을 보자면 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른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잘 활용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거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도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미세먼지가 높다는 경보가 발령이 되면,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의 개인적인 조치를 권장하는 대로 잘 따르는 것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장된 걱정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도 가장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은 부가적인 문제이다. 즉, 김부장이 담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한두번의 폐렴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높아진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응급실로 실려올 수도 있다. 임여사가 계속 운동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짠 음식을 선호하면 나이가 들면서 미세먼지의 미세한 영향 때문에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담배를 끊고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고,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예방접종을 권장한대로 잘 한다면 두분 모두 현재의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건강한 행동만 지속하여 준다면 그 정도의 영향은 발전되고 있는 의료기술이 충분히 보상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창**

저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의사

김영란법,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 금지법의 모든것

김영란에게 묻다



저자소개



박상홍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법을 꼽으라면 단연 김영란법일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알려진 내용은 3, 5, 10 규정 즉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금품만 제공 할 수 있도록 한계선을 정한 규정이다. 동 규정의 내용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소액의 금품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가능하면 공직자와는 사적인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영란 전 대법관(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하 김교수)은 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소위 김영란 법으로 불리워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착안하게 된 것일까.

책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는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책은 경향신문 이범준기자와 대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김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김교수가 소년심판 판사로 재임하던 시절만 해도 소년법원의 직원들은 자연뽕 사건(재판에 관계없이 결론이 정해진)으로 돈을 두둑히 챙기던 때였던 모양이다. 당시 김판사는 엄격한 재판으로 대부분의 소년범을 소년원으로 보내었는데 준강도치상죄를 범한 소년이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보호관찰처분을 내렸더니 법원 직원이 찾아와 자신의 예측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항의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판결을 두고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짐작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풍경은 법원직원이 판결을 하기 직전 판사를 찾아와 청탁을 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직원이 판사에게 휴가비를 주고, 변호사가 총무판사에게 실비조의 금품을 제공하던 법원의 오염된 문화로 어떻게 공정한 법치실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또 판사는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청탁도 자주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와 가까운 변호사 혹은 실력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는다는 것이다.

청탁만 문제였겠는가. 밥사주고 상품권주는 것이 사람사이에 오고가는 정이라고 느꼈지만 실상 소액으로 판사를 매수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명절 때면 변호사들이 법원의 판사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고백을 한다. 사실 거액보다 소액의 금품제공이 공직자와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교수는 여러 가지 청탁과 소액금품제공이 일상화된 법원의 문화속에서 청탁과 금품수수를 거절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부정청탁에 대해 NO라고 면전에서 용기있게 말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된 매뉴얼 즉 「당신의 청탁을 받으면 내가 처벌받으니 나는 청탁을 받을 수 없소. 다시 한번 더 청탁하면 신고하겠습니다」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인간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된셈이다.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이해

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배경은 세월호 사건때문이었다. 어찌면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뽑겠다는 의도로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최초 김교수가 제안한 법안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당초 적용대상을 공무원에

김교수는 여러 가지

청탁과 소액금품제공이

일상화된 법원의 문화속에서

청탁과 금품수수를 거절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부정청탁에 대해 NO라고

면전에서 용기있게 말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된

매뉴얼 즉 「당신의 청탁을

받으면 내가 처벌받으니

나는 청탁을 받을 수 없소.

다시 한번 더 청탁하면

신고하겠습니다」은 잘못된

인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인간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된셈이다.

청탁금지법이 좀 더 빨리
한국사회에 정착했다라면
이같은 권력의
사유화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내비춘다.

한정했다면 국회 통과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적용했다. 둘째 형법과 공직윤리법에 규정된 부정청탁의 개념을 15가지 행위유형으로 구체화시켰다. 김교수는 이같이 부정청탁을 유형화하고 유형화한 각 조항마다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한계를 지은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을 보인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국회의원의 업무는 정책을 만들고 입법활동을 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는 민원을 국회의원의 영향을 빌려 제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100만원 초과'의 금품은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은 예외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교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농축산업이 위축되었고 이 때문에 위 규정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펼쳐지는 것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법 원안을 만들 때 포함되었던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이 제외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의 수행과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규정이다. 예를들면 현행 민사소송법규정에도 재판정의 판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 간에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통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어떨까. 동일한 법무법인이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1심때 원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심때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담고싶었던 이익충돌규정은 대기업 A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모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 A의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으나 조급한 입법추진으로 이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입찰가격을 예측하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은 필수적으로 청탁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청탁금지법을 대상으로 위헌소원을 제기했는데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3,5,10기준을 국회가 아닌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교수는 위헌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청탁금지법을 형법으로 본 듯 하나 실질적으로 동법은 형법이 아닌 행정법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동법의 부정청탁금지 규정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 중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받을 때 가해지는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타당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교수와 이기자의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재단에 대기업의 출연을 강조한 청와대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고 민간인이 특정기업에 취업하도록 청탁한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태는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청탁금지법이 좀 더 빨리 한국사회에 정착했다라면 이같은 권력의 사유화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내비춘다. 나아가 김교수는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면 앞으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맺는 글

청탁금지법이 한국사회에 발을 딛은 지도 어느새 1년 6개월이 지났다. 최근 청탁금지법의 3,5,10규정으로 농축수산물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용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농축수산물의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3,5,10 규정과 100만원 이하의 금품제공이 직무관련성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은 대부분 대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저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나 읽고 있다는 느낌보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교수가 해설하는 청탁금지법이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문화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거절할 때 구체적인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감옥에 문이 열려있고 그 문을 빠져나가는 죄수들에게 준법정신이 없다고 나무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이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라는 이익충돌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대학교 업무를 하며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법률이다. 책을 통해 들려준 김교수의 청탁금지법 해설은 입법을 주도한 분담계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마치 과외수업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현행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금지 규정이 의도하는바는 금품제공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수단으로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된 문화를 근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로스쿨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창**

‘예술’을 뜻하는 독일어인 ‘쿤스트(Kunst)’는 본래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의 ‘können’에서 비롯되었다. 예술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로 시작된 까닭은 아마 예술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오래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나기 때문이 아닐까.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 3월의 눈

매 공연 관객의 눈가를 붉게 물들이며 전석 매진을 기록한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3월의 눈>이 3년 만에 돌아왔다. 재개발 열풍으로 한평생 일구어놓은 집 한 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노부부. 정작 그들은 담담히 일상을 지내지만 이들을 제외한 주변은 시골벽적화기만 하다. 급변하는 이 시대,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묵묵히 담아낸 이 작품은 자극적인 내용도, 극적인 반전도 없지만 잔잔한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풍자와 해학이 진하게 살아있는 마당놀이를 비롯해 정통 연극, 창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온 손진책 대표가 연출을 맡았으며, 네 명의 원로 배우(오현경, 손숙, 오영수, 정영숙)가 더블 캐스팅되어 무대에 선다.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공연기간 2018.02.07.(수)~2018.03.11.(일)
티켓가격 R석_5만원
홈페이지 <http://www.mdtheater.or.kr/>

Play-acting

다시 펼쳐 일어나리라 뮤지컬 명성황후

1866년 봄, 각국의 이권다툼으로 혼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한반도. 고종과 결혼한 명성황후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세자를 잉태한다. 한편 한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불사르던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구축의 큰 걸림돌로 명성황후를 지적하고 암살을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인 <명성황후>는 1995년 초연 이후 23주년을 맞이했다.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지난 20주년 기념 공연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초적인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시각적 요소를 최소화해 배경보다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20년이 넘는 공연 기간 동안 누적관객 180만 명을 돌파, 1300회 공연 기록을 달성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브로드웨이를 진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뮤지컬로 꼽힌다.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기간 2018.03.06.(화)~2018.04.15.(일)
티켓가격 VIP석_14만원, R석_12만원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



현대조각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展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고 있다. 이번 한국 특별전은 1940년대 후반 자코메티 전성기 시절 작품이 대거 들어온 데다, 세계에서 유일한 석고 원본 작품 15점이 포함되어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특별전은 미술전시 상반기의 블록버스터로 불리는데, 대표 전시작 중 하나인 ‘걸어가는 사람’은 석고 원본으로 1,200억 원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석고 작품은 계속 똑같이 주조할 수 있는 청동상과 달리 세상에 하나 밖에 없고, 특히 이번 전시의 작품들이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예술혼을 쏟아 넣은 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전시기간 2017.12.21.(목)~2018.04.15.(일)
티켓가격 성인_1만 6천원, 청소년_1만원
홈페이지 www.covana.co.kr



지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그녀

지젤

순박하고 명랑한 시골 소녀에서 사랑의 배신에 몸부림치는 광란의 여인까지, 관객들이 발레공연 <지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젤의 모습은 다양하다. 특히 죽음을 뛰어넘는 애뜻하고 송고한 그녀의 사랑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이 4년 만에 관객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1985년 한국 최초로 올린 첫 공연부터 흥행에 성공했으며, 문훈숙 단장에게 ‘영원한 지젤’이라는 별칭을 안겨준 작품이다. 푸른 달빛 아래 움직이는 발레단만의 세련되고 일사분란한 군무가 압권이다.

Performance



공연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공연기간 2018.04.06.(금)~2018.04.15.(일)
티켓가격 R석_10만원, S석_8만원
홈페이지 www.universalballet.com

Musical

LAWSCHOO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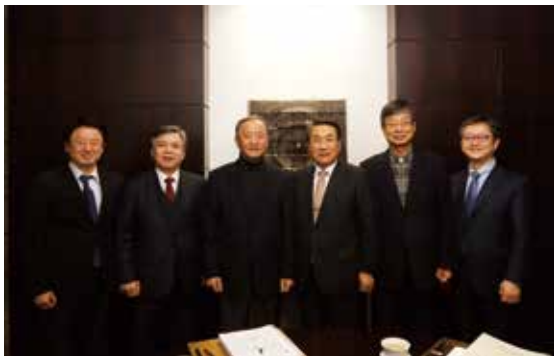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세미나 개최

1월 22일(월)부터 1월 25일(목)까지 홍콩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홍콩대학교 로스쿨을 방문하여 법조인 양성제도와 로스쿨 교육과정과 평가, 변호사시험, 변호사의 동남아지역 진출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5개교 원장단은 홍콩의 법원을 방문해서 재판 과정을 견학하고, 해외인턴 실무실습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홍콩 현지 로펌도 방문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대 이사장단 간담회

지난 2월 1일(목) 프라자호텔(소문동 소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대 이사장단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호문혁 이사장(1대), 신현운 이사장(4대), 신영호 이사장(5대), 오수근 이사장(6대)과 현재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형규 이사장(7대),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 자리에 모인 이사장단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 제2차,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

2월 6일(화)부터 2월 9일(금)까지 2018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출제하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총괄위원장을 맡았으며, 정형근 원장(경희대)이 공법 영역위원장, 차정인 원장(부산대)이 형사법 영역위원장, 정병호 원장(서울시립대)이 민사법 영역위원장, 홍석모 원장(강원대)이 선택과목 영역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워크숍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협의회 모의시험 등 출제를 다수 경험한 교수들과 다양한 경력의 출제위원(판사, 검사) 85인이 참여했다.



LAWSCHOOL NEWS

제39차 이사회 및 제43차 총회 개최

지난 2월 21일(수)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 협의회 대회의실(서소문동 소재)에서는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39차 이사회와 제43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0인이 참석해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법전원의 주요 현안사항과 2018년 법전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원장



민만기 원장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전공: 형사법
mmk1122@skku.edu



안강현 원장

연세대학교 법전원
전공: 상법/국제거래법
aim@yonsei.ac.kr



김학기 원장

전북대학교 법전원
전공: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khk@jbnu.ac.kr



김성천 원장

중앙대학교 법전원
전공: 형법
sckim230@gmail.com



이정표 원장

부산대학교 법전원
전공: 중국법/상법
jeplee@pusan.ac.kr



구재군 원장

아주대학교 법전원
전공: 민사법
jkklaw@ajou.ac.kr



김순석 원장

전남대학교 법전원
전공: 상법
soonskim@jnu.ac.kr



문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전공: 헌법/언론법
conlaw@hufs.ac.kr

제10차 넬슨 만델라 세계 인권 모의재판대회 Nelson Mandela World Human Rights Moot Court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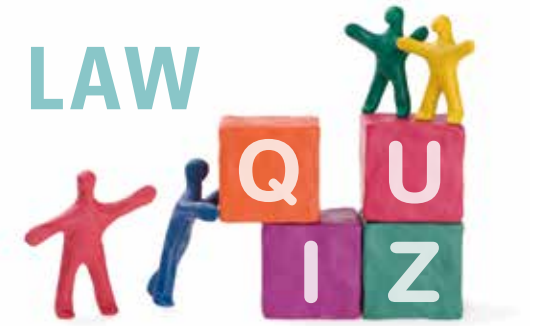
- 개최 일정 : 2018.07.15.(일)~2018.07.20.(금)
- 개최 장소 : 유럽 유엔본부(Palais des Nations, 스위스 제네바)
- 서류 마감 : 2018.04.16.(월)
- 대회 방법 :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참가자들은 최근의 인권 이슈를 기초로 만든 가상의 분쟁 사례에 대해 양측의 입장에서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UN 5개 지역 각각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팀은 유엔회의장서 구두로 이어지는 최종 결선에 참가하게 된다.
 - 최종 라운드는 국제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한 저명한 국제법학자들로 구성된 패널 앞에서 진행됨.
 - 당지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선에 선발된 팀들은 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 상세한 정보는 <http://www.chr.up.ac.za/worldmoot> 에서 확인 가능



중부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 채용 분야 : 세무
 - 주요 업무 :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관련업무,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납세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
 -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소송수행 경험자 우대
- * 변호사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18.4.11.) 기준임
- 원서 접수 : 2018.03.14.(수) ~ 03.16(금)
 - 면접 시험 : 2018.04.11.(수)
 - 최종 발표 : 2018.04.25.(수)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박형

1.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

- 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치과의사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 대행이라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전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조종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甲은 (1) 21:30경 A소유 식물원 건물 밖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식물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관상수 한 그루를 꺾으나, 혼자 운반하기 힘들자 乙에게 연락하여 오게 한 후 乙과 함께 관상수를 운반하다 미처 식물원 건물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A에게 발각되자 甲과 乙은 관상수를 그대로 둔 채 승용차로 도주하였고, (2)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물원을 빠져 나가려는데 A가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순간 乙은 당황한 나머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A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도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

- ① 위 (1)에서 甲은 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의 죄책을 그리고 乙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
- ② 위 (2)에서 甲과 乙은 모두 특수폭행의 죄책을 진다.
- ③ 위 (1)과 (2)에서 甲은 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乙은 준특수강도에 해당한다.
- ④ 甲과 乙이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1)과 관련하여 甲이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범행을 시인하는 경우, 검사는 乙을 甲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이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2)와 관련하여 법원은 선서 없이 한 乙의 법정진술은 갑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3.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

- ①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 ③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그 채권자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이행기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도 있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세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